

용역폭력 피해사례 보고대회 및 경비업법 개정 토론회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시 | 2012년 8월 14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단, 참여연대

주관 | 국회의원 임수경, 국회의원 진선미

프로그램

1부 개회식

사회: 임수경 국회의원

14:00 국민의례

14:05 축사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14:10 개회사 이찬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

2부 피해사례 보고대회

14:15 사례발표 정준위 금속노조 SJM지회 수석부위원장

이선형 북아현동 철거민대책위원장

3부 경비업법 개정방안 토론회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14:30 보고 **SJM공장 용역폭력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보고**

은수미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진상조사단 간사

14:40 발제 **현대판 귀족의 사병, “경비용역”**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변호사

15:00 토론 임선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

김철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이상팔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하상구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15:40 보충토론

16:00 폐회

목차

축사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5
축사	김태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7
개회사	이찬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	9
인사말	임수경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11
인사말	진선미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13
사례1	노동현장 용역폭력 피해사례 / 정준위	15
사례2	용역깡패로 인한 세입자 피해사례 / 이선형	16
보고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보고 / 은수미	19
발제	현대판 귀족의 사병, “경비용역” -경찰감독행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김남근	37
토론1	노동현장 용역폭력의 문제점 및 경비업법 개정방안 / 임선아	52
토론2	개발 사업에서의 용역폭력 구조 및 근절방안 / 이원호	57
토론3	경비용역 배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철호	66
토론4	경비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이상팔	70

축사



박지원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지원입니다.

용산참사와 쌍용차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경비용역 업체에 의해 불법적이고도 참혹한 유혈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공권력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자비한 폭력에 힘없는 국민을 방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태이후 즉각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으로 달려가 피해자들과 경찰, 해당업체를 면담 및 조사하고, 국회 행안위의 즉각 소집을 통한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경비용역 업체의 폭력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금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책임있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경비용역업체의 폭력을 근절하고, 국가가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참된 공권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민주통합당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찬열 간사님과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시는 임수경, 진선미 두 의원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참여연대와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전문가와 정부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경비업법의 바람직한 개정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내용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통합당은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됩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을 행복하게, 국민을 안전하게, 국민을 자유롭게 해드리는 국가를 만들고 정의로운 민주정부를 세우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또한 그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이 더욱 국민 속에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축사



김태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반갑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태환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노사분규 및 각종 재개발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경비용역 업체의 폭력행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께서 『경비업법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경비업체들의 본 업무는 시설 및 신변보호와 방어일 뿐, 폭력을 휘두르는 공격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시대의 재개발 철거 현장에 등장해 철거민들을 폭행했던 철거용역의 구태가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폭력 기업이 자라나는 토대는 폭력적 시위문화 등 우리 사회의 폭력화 경향과 맞물려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적 폭력이 용인된다면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에 빠지게 됨을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SJM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이 부실 대응을 시인하고 경찰서장 등 간부에 대한 중징계를 검토하기로 한 만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주리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경비업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폭력이 근절되고, 성숙한 시위문화가 자리잡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시는 참여연대와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임수경 의원님과 진선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개회사



이찬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찬열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용역폭력 피해사례 보고대회 및 경비업법 개정방안 긴급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위해 힘쓰시고 계신 '참여연대'와 토론회를 함께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7일, 사설 경비업체의 직원들이 파업 중인 노조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조원 30여명이 곤봉과 쇠파이프 등에 맞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신체적·심적 고통을 겪으신 노조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사 갈등 현장에서 경비업체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현장에서 방관하는 공권력과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 폭력용역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비업체의 불법행위가 이슈화될 때마다 재발방지대책이 제기 되었지만 허공속의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노동·철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 사건에 대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토론자님들께서 심도 깊게 대안을 논의해주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폭력용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폭력 용역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다 같이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임수경 /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경비 용역에 의한 폭력 만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해결방안과 공권력의 존재 의미를 성찰하는 긴급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님들과 참여연대가 함께 주최하는 것으로 국회와 시민 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데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을 위임받은 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사적인 폭력에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가 이러한 역할을 망각하고 사적 폭력과 억압이 횡행한다면 국가의 존재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과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강한 힘을 가진 자본과 권력이 동원한 사적 폭력에 희생되고, 경찰로 대표되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뒷짐을 지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무자비한 사적 폭력 앞에 희생되는 혼돈과 무질서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참석해주신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를 포함하여 모든 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정의롭고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민주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비 용역 폭력 근절과 바람직한 공권력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업법> 개정 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이 토론회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공권력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진선미 /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노동자도, 재개발 세입자도 보호해야 할 우리 국민입니다

지난 2일 민주통합당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 일원으로 안산 SJM 공장과 폭력의 현장엘 직접 다녀왔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중인 SJM 조합원들을 만났습니다.

조합원들이 일하던 SJM 공장 현장에는 7월 27일 새벽에 자행된 폭력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2층에는 경비용역들이 조합원들에게 던진 자동차 부품 벨로우즈와 쇠덩이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2층의 철제 벽과 문들은 이 부품을 던지던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듯 움푹 파이고 쇠가 찢어져 구멍난 곳만 수백 곳이었습니다. 소화기까지 쫓혔던 자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살상 무기에 가까운 부품에 다치고 경비용역들로 폭행을 당해 조합원 43여명이 다쳤고, 11명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방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비업체 직원들이 여전히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2012년인지, 군사정권 시절 노동자를 때려잡던 1970년대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취임 이후 민주주의를 향한 모든 시계가 30년 이상 후퇴됐다고 하지만, 처참하게 망가질 데로 망가진 노동인권의 현장, 공권력이 실종된 현장에서 입법부가 해야 할 역할의 막중함에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경비용역의 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적이 있었습니다. SJM에 투입된 컨택터스를 포함해 용역업체의 폭력과 경찰의 묵인 방조로 인해 그동안 노동 현장 곳곳에서는 조합원들이 폭력에 내몰리고 이로 인해 노동조합이 해체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유성, 쌍용, 한진, 쓰리엠, KEC, 재능교육 등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곳에서, 용산, 명동마리, 부천, 중동 등 재개발이 이뤄지는 곳에서 우리의 국민이, 마땅히 보호받고 권리가 지켜져야 할 서민들이 용역의 곤봉과 방패에 찢겨진다는 것은 공권력의 실종이자, 법치의 실종입니다. 노동을 배제하고 노조를 부인하는 야만적인 회사 자본, 민간 군사업체까지 지향하면서 불법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경비용역업체, 국민을 지켜야함에도 폭력을 묵인하거나 한패가 돼버린 경찰, 이 삼각동맹의 연결고리를 이번에는 제대로 끊어내야 합니다.

노동자도 조합원 이전에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이 땅의 국민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도 공권력이 수호해야 할 우리 국민입니다. 현재의 법으로도 사전에 폭력을 방지하고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경찰은 수수방관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족하거나 방기된 법들, 회사의 사주와 용역의 편에서만 활용되는 '경비업법'부터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비용역 관련 경찰 감독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시면서 오늘 발제를 통해 '경비업법' 개정안까지 준비해주신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경찰 공권력의 변화는 법 시행 전에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 1

노동현장 용역폭력 피해사례

정준위 / 금속노조 SJM지회 수석부위원장

용역깡패로 인한 세입자 피해사례

이선형 / 북아현동 철거민대책위

북아현뉴타운1-3구역에서 2006년부터 약 6년간 곱창 막창 장어구이 전문식당(10평, 테이블 6개, 직원 없이 2명이 운영)을 운영 하였고, 지금은 강제철거 후 그 가게 앞에서 10개월째 노숙을 하며 북아현생존대책위(연대하는 분들과)를 구성하여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뉴타운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2010년 10월 재개발조합이 상가세입자들에게 명도소송을 제기 하였고, 이후 약1년이 지난 2011년 10월 저희는 명도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조합과 구청의 불법성과 부당함에 대해 항변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2011년 11월 9일 새벽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오전11시쯤 주위 분들의 급한 연락을 받고 가게로 와보니 건장한 용역들이 가게를 지키고 있고 가게 안에는 이미 가게 문을 따고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제가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문을 따고 들어와도 되냐고 하니, 법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신분증 제시도 없음) 조합 사람과 저를 불러 합의를 권하였고, 조합이 거절하자 강제명도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고기류와 식자재, 살아있는 민물장어, 식기와 가전제품들이 마구잡이로 순식간에 어디론가 실려 갔습니다)

(조합과의 단 한차례의 협의도 거절당한 채 강제명도집행을 당하게 됨)

이때부터 48시간동안 저희는 이수라장인 가게 안에서 용역들과 대치하는데, 건장한 용역깡패들이 팔순노모와 가족들에게 온갖 욕설과 폭행으로 가게에서 끌어내려는 것을 간신히 버텼습니다.(핸드폰으로 상황을 찍으려하자 손을 쳐서 폰이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건물 밖 오물들을 삽으로 퍼붓고, 불판을 담가두던 오물을 바닥에 부어 버리고 건물 내 화장실도 차단시키고,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고, 돛자리 반입도 안 되는 차가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캄캄한 어둠과 용역들의 협박, 감시 속에 인간 존엄성이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2011년 11월 11일 오전 10시에 법원재판장께서 조합과 상가세입자들과의 영업보상협의를 중재해 주신다고 하여 여자 혼자만 남기고 모두 법원에 가고 없는 사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1시쯤 가게를 지키던 집사람에게 한 남자가 “조합에서 왔다”, “합의를 하자”며 말을 걸며 대화를 시작함과 동시에 갑자기 “퐁”하며 포클레인이 건물 벽을 뚫고 덮치고 동시에 “끌어내”하며 용역들이 집사람을 끌어내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식간에 가게 안에는 포클레인으로 돌무더기가 메워지면서 그 돌무더기와 철재(아시바)에 다리가 끼고 대못이 박힌 상태에서 용역들은 양어깨를 잡아당기고 배를 구타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밖에 먼저 끌려 나갔던 여동생 2명이 언니 죽이겠다며 달려들어 철재와 돌무더기를 간신히 밀치고 구조하였는데, 이미 거의 실신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막 법원 중재회의에서 돌아와 보니 경찰들과 주민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격분한 제가 저도 기억 못하는 험한 막말을 하기도 하였지만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실신상태의 집사람은 엠브란스가 도착하여 인근 병원에 입원 후 대못이 박힌 다리에 봉합 수술을 하였고, 복부와 양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자 복부 통증이 계속되면 (내장 파열 등) 큰 문제이니 반드시 의사에게 말하고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 진단을 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2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 후 가게 앞 천막에서 노숙하며 있습니다만, 조합이나 용역으로부터는 치료비는커녕 어떠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건물 앞 천막노숙 몇 달간은 용역들이 건물 안에서 24시간 대치한 상태라 혹시 헤꼬지 할까 하는 공포감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야할 저희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살인적 폭력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조합장이나 철거용역업체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없고 폭력을 행사한 용역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벌금 수십만원만 부과된 채 법원에 계류 중이라 합니다.

살인적 강제철거를 자행하는 조합과 철거용역업체도 잘못이고 지탄 받아야겠지만, 이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방조하거나 막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저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공권력(법원, 구청, 시청, 경찰)이 더 크게 잘못되었고 지탄 받아야 합니다.

1. 법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용산참사 이후에 신설된 법조항을 무시한 명도판결 → 강제명도 집행의 근거가 됨.

2. 구청(시청)

①법적의무 사항인 보상협의회”구성을 심지어 구청장이 상가세입자들에게 약속까지 하면서 지키지 않은 점. → 보상협의회를 통한 민주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②“조합, 구청장, 시장은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용산참사 이후의 신설 법조항을 지키지 않은 점.

③멸실신고도 없는 불법적인 살인적 포클레인 강제철거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선 행위라 불법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용역 편에서 용역을 대변하는 듯한 구청의 무책임함.

④서대문구청, 용산구청의 전직 구청장들은 하나 같이 재개발과 관련하여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각종 인허가권으로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데 이것을 분쟁조정 등 민생 해결에 사용하지 않고 사리사욕에 남용했던 것.

3. 경찰

강제명도 집행은 물건에 대한 행위라서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끌어내는 행위는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경찰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살인적 강제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때 현장에서 지켜 보던 경찰은 가해자인 용역깡패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즉각 중단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음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용역들의 행위를 정당화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사고 직전에 만일의 사태가 우려되어 경찰에게 사람만은 다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에 확답까지 받았었습니다.)

4. 검찰 법원

폭력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똑같은 폭력이 재발치 않아야 합니다. (지금껏 피해자 진술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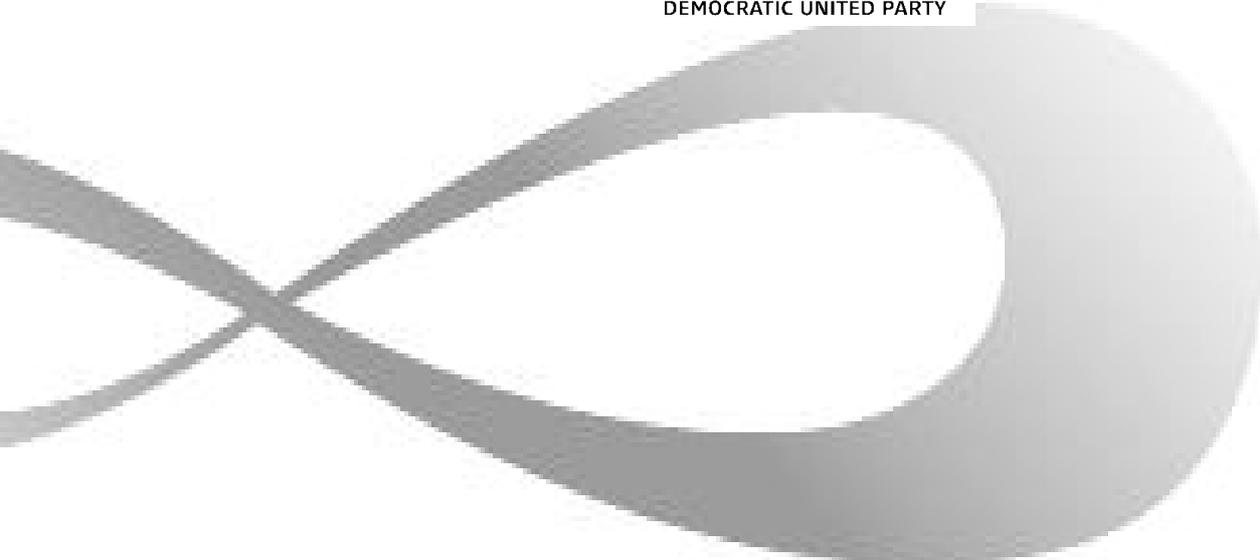
민주통합당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

진상조사보고서

2012. 8. 6.



민주통합당
DEMOCRATIC UNITED PARTY



- 목 차 -

A.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

1.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 구성
2. 현재까지의 활동개요

B. 활동보고

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SJM 지회 면담
2. (주) SJM 경영진 면담
3.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조사
4. 피해발생 현장 조사
5. 부상자 현황

C. 조사결과

1. 위법한 직장폐쇄 및 대체근로
2. 민간군사기업 (PMC) - CONTACTUS
3. 막대한 차익발생과 자금의 흐름
4. 권력의 비호아래 성장한 폭력산업
5. 진상조사 종합결과

A. 폭력용역업체진상조사단추진개요

1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 구성

- 민주통합당은 지난 7월 27일 발생한 동시다발적 직장폐쇄사건과 민간군사기업(PMC)의 폭력 진압행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의 요청에 따라 2012. 8. 1.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을 구성.
-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은 신계륜(申溪輪)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성.

•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 •

단장 신계륜(申溪輪)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간사위원 은수미(殷秀美)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김민기(金敏基)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김경협(金景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김현(金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한정애(韓貞愛)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진선미(陳善美)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장하나(張하나) 환경노동위원회

2 현재까지의 활동개요

일시	내 용	비 고
8/1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 구성	신계륜(단장), 진선미, 김민기, 김 현, 은수미(간사), 김경협, 장하나, 한정애
8/2 14:00~14:50	민주노총 안산지부,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SJM지회 면담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SJM지회장, 노동조합 간부 면담
15:00~16:50	주식회사 SJM, 안산단원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면담	-주식회사 SJM 경영진 -안산단원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16:50~18:00	SJM공장 및 피해현장 조사	
18:30~19:00	단원병원 방문	피해자 방문조사
19:20~19:50	한도병원 방문	피해자 방문조사
8/4	진상조사단 전원회의	
8/10	폭력용역 피해자 증언대회	14:00, 의원회관 소회의실

B. 활동보고

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SJM지회 면담

- **(회사개요)** 주식회사 SJM은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감소용 부품인 벨로우즈(bellows)를 생산 (세계시장 점유율 30%, 생산량 80% 현대기아 납품)
- **(노사관계)** 회사는 안산지역 내 중견기업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수년간 매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음.
- **(최근의 변화)** 회사는 2011년 초부터 구조조정설을 유포, 단협 보호수준 약화 요구.
 - 그러나 2011년 매출 1천억에 당기순익 134억. 2010년에 비해 매출 51%, 당기순익 260% 증가.
 - SJM은 2010년, 그리고 최근 노무 재무 책임자가 바뀌고, 외부에서 구조조정 컨설팅 전문가를 영입
- **(쟁의행위 개요)** 최근 회사는 노동조합에게 해고사유 증설 등 51개 조항의 하향체결을 요구,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반대
 - 노동조합은 2012. 7. 16.까지 사용자와 교섭했으나 최종적으로 결렬
 - 노동조합은 조합원 25%(약 50여명)에 대해 태업(산출물의 약 30%가량 축소)전술 사용(7.말 8.초경 근무강도 50% 수준으로 올릴 것 예정)
 - 그러던 중 회사는 중국공장에서 만든 부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납품(이른바 Buy Back, 노사합의로 금지된 사항임)
 -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을 전부 거치고 사실상 본격적인 쟁의행위를 준비 중이던 상황
- **(무장폭력을 동반한 직장폐쇄)** 회사는 2012. 7. 27. 05:10 공장점거를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실을 먼저 안 조합원들이 먼저 공장에 들어와 있자 선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조합원들을 폭행
- **(경찰대응)** 회사가 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공장 밖에 3개 중대 규모의 경찰이 있었으나 폭력사태에 개입하지 않음
- **(현재상황)** 현재까지 총 42명이 부상을 입음. 노동조합은 공장에서 완전히 퇴거된 상황이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퇴거 후 폐쇄된 상황
- **(당일 시간별 사건발생상황)**
 - 03시 40분 : 버스 6대와 승용차 3대 화랑유원지 주차장 도착
 - 용역직원 약 300여명 하차 후 장구착용 및 진압도구 불출

- 04시 25분 : 회사측 관계자(민흥기, 김성호, 배대석)가 버스 5대를 인도하면서 공장으로 출발
- 05시 00분 : 공장 정문과 후문에 조합원(SJM소속 조합원 약 100여명) 용역직원과 대치
용역직원 진영을 갖춘 후 즉시 소화기를 발사하면서 공장으로 진입
- 05시 10분 : 용역직원 공장 내부로 진입
조합원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피신
용역직원들 생산제품(벨로우즈)을 집어 조합원들을 향해 겨냥투척(약 1000여개)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 발생
조합원 조모씨, 집단구타 사건 발생
- 05시 30분 : 공장2층 유리벽 쪽으로 조합원들 피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1층으로 뛰어내려 피신시도
일부는 경찰에 전화로 112에 구조요청
일부는 공장 사무실 내부 문을 따고 들어가 피신
공장 주변에 진경 3개 중대 배치 시작
- 06시 10분 : 외부에 있던 조합원들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지만 제지
공장 내부에서 도망 나온 조합원들 일부가 용역직원들에게 구타당함
- 06시 30분 : 용역직원 2층으로 진입 시도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 부품 등을 맞아 다수 부상자 발생
- 07시 00분 : 완전 진압 후 조합원 전원 공장 밖으로 퇴거됨
작전 종료
- 11시 00분 : 후문에 직장폐쇄 공고문 부착

2 (주)SJM 경영진 면담

- 경영진 참석자 : 강OO(대표이사), 민OO(경영지원팀장)
- (쟁의행위의 적법성 관련)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음.
 - ①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사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이 아닌 경영권 참가, 경영권 관련 사항, 고용안정 관련 사항 등이었음
 - ② 총 12차에 걸쳐 교섭을 했으나 노동조합은 더 이상 교섭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교섭결렬을 통보
 - ③ 노동조합은 그날로부터 1주일 간 태업(30% 삭감) 진행, 그 다음주 태업 수준을 50%로 올리기로 하여 부품 결품상황을 맞을 위기에 처했음.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2012. 5. 12.이후 특근거부를 한 것과 연장근로를 거부에 의해 이루어진 점에 의해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함
- 사용자는, 1996년 노동조합의 전면파업(약 1개월간)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별도의 쟁의행위는 없었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는 원만한 편이었다고 진술
 - 현재 전체 근로자 360여명 중 조합원은 265명이고,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은 240여명

□ (기간 노사관계에 비해 이번 직장폐쇄가 즉각적으로 단행된 이유)

사용자측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면서 이번 직장폐쇄의 배경에 대해 설명함

- 지난 집행부와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섭을 통해 주간 2교대제를 도입함(국내 최초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올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타임오프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
- 회사의 영업환경은 매우 좋은 편으로, 현대기아차의 납품주문도 늘어나고, 해외공장도 확장되고 있으며, 세계적 마켓 셰어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해외 유명 완성차메이커에도 부품을 납품 → 고용도 늘리고, 정년까지 고용도 보장되는 상황
- 그러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인사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음
- 특히 단협 상 협의사항들이 있었고, 사용자가 영업에 바빠 몇몇가지 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갈등이 증폭
- 생산물량이 달리면서 중국공장에서 바이백(Buy Back)을 노동조합 양해 없이 실시한 사실이 있는데 노동조합이 이것을 알게 되어 문제가 커졌음.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예비 계획으로 인식하기도 함
- 노동조합이 태업을 실시하면서 전체 생산량이 30%~50% 줄어들게 됨. 이런 상황에서 관리자들로 투입해 생산할 수밖에 없었고 관리자들이 야간(02:00~05:00)에 투입되어 근무를 함
- 그러나 관리자들도 보니 주문량을 전부 맞출 수 없고, 불량도 늘었음
- 회사로서는 휴가기간 전에 재고를 확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음(7. 20.경 결심)
- 관리자가 공장에 들어가는 것을 일부 조합원들이 방해하는 일도 발생했음
- 그러면서 경영진의 판단으로는 조합원들이 기계에서 나와 밖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 재고량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런 절박한 판단에서 인사팀장의 의견을 들어 직장폐쇄를 단행하게 된 것임

□ (컨택터스와의 계약체결 배경) 회사는 교섭을 진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하다가 「컨택터스」라는 회사를 알았다고 답변

- 회사는 컨택터스가 민간군사기업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다만 이 회사가 가장 경험이 많고 실적이 좋아서 선택하게 되었다고 답변.
- 계약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2012. 7. 23., 계약은 2012. 7. 25.
- 계약체결은 실무진에서 담당했고 민흥기 팀장의 주도로 진행
- 회사의 대표이사과 회장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술

□ (진입 결정과정 및 결정 책임자) 회사는 진입과정에 관하여,

- 회사는 시설보호를 위해서 2012. 7. 26. 11:50경 근무가 마무리되므로 그 시간에 맞추어 경비인력을 투입하려고 했음
- 노조가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를 돌려 야간근무자들을 대기시킴
- 회사로 경영진과 용역업체 소속 인력이 도착했을 때(7. 27. 04:00경)에는 이미 조합원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소화기, 쇠파이프, 각목에 못을 박아 만든 가시망동이를 준비하고 있었고, 외부인력(금속노조 사무국장 이선자를 보았다고 진술)도 함께 회사에 들어와 있었다고 진술
- 경영기획팀장이 소화기를 맞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멀리 도망갔고, 이후 용역업체 소속 관리자에

- 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문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여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음
- 회사는 3개 공장을 방어해야 하므로 250여명을 불렀다고 진술
- 회사 경영기획팀장이 직원들에게 다가가자 직원들이 갑자기 소화기를 뿌리며 공격을 해서 다가가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진술

□ **(도급계약서의 내용)** 회사와 컨택터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 당해 계약은 2012. 7. 25. 서면으로 체결
- 계약의 목적은 ‘경비대상 시설 및 장소의 도난,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해발생의 방지’
- 경호인원은 1~3000인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요청에 따라 투입함
- 1인당 일당은 주간(17만)/야간(17만)으로 함
- 숙식은 별도로 회사의 부담으로 함
- 계약기간은 2012. 7. 27.부터 요청의 종료 시까지로 함
- 을(컨택터스)이 경비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해지 되도록 함
- 계약서상 ‘을’ (컨택터스)의 경비인력의 폭력 폭행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는 전적으로 ‘을’ 이 책임지지만 단, ‘갑’ (에스제이엠)의 요구에 의한 행위인 경우에는 ‘갑’ 이 그 손해를 부담하도록 규정

□ **(대체인력의 수급현황)** 회사는 조합원들을 회사 밖으로 내 보낸 다음 바로 그날로 대체인력을 수급해 현장에 투입한 사실을 확인

- 회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11~12명을 공장에 직접 투입해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들의 경우 정식 취업비자로 들어온 자들이 아닌 것으로 확인
- 회사는 2012. 6. 17.~동년 8. 16.(2개월)을 기간으로 하여 시흥시 정왕동 소재 파견업체인 (주)워크피아를 통해 생산직 직원 14명을 시급 7,177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단, 6. 17.~ 7. 7.까지는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부터 투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바 있음.
- 회사는 2012. 7. 27.~회사의 요청시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시흥시 정왕동 소재 파견업체인 (주)잡솔루션을 통해 생산직 40여명을 투입하여 일급 67,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바 있음.

- 참석자 : 송OO(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우OO(안산단원경찰서장)
-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회사는 파업이 불법파업이라고 하고, 노동조합은 그와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에 관해 의견을 요청
고용노동부는 불법파업 여부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답변
- (경찰청의 상황파악 시점) 경찰서장은, 최초 사용자로부터
2012. 7. 27. 07:10 직장폐쇄 실시예정이라 통보받았다고 진술
 - 회사는 2012. 7. 26. 경찰에 경비인력투입신고서를 제출하여
2012. 7. 27. 06:00에 199명을 투입하고
2012. 7. 27. 14:00에 45명을 투입한다고 신고한 바 있음.
 - 경찰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간에 실시할 것을 권고함
 - 단순 의견으로 회사가 반드시 받아들일 의무는 없는 통상적 권고
- (경찰의 병력배치) 경찰은 05:30에 3개 중대를 배치함
 - 원래 투입예정시간은 07:10이었지만 사전에 투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05:30에 먼저 병력을 배치한 것임
- (경찰의 무대응에 관하여) 05:30 도착 당시는 소강상태였기 때문에 충돌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진술
 - 이후 1개 중대장으로부터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을 무전으로 확인
 - 이후 2차 충돌이 발생하고 난 뒤 정문으로 팔에 피를 흘리면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
 - 이후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중재를 시도하였다고 진술
- (향후 사법조치에 관하여) 경찰은 8월 4일 까지 총 61명을 조사했고,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힘. 용역업체 대표들도 조사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경비업법」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중이라고 답변
 - 노동조합에 대한 수사는 예정중
 - 경찰서장은 컨택터스의 허가취소를 결정하고 행정과정이 등이 있어서 8. 14.경 허가 취소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
 - 회사는 그럴 경우 업체를 변경해 직장폐쇄를 지속할 것이라고 답변.

4

부상자 현황

연번	성명	소속	나이	상해부위	진단기록
1	김OO	조합원 성형 1	39	머리 7바늘 꺾임, 손목 타박상	
2	정OO	조합원 LNG	47	경추염좌, 우경골 하단부골절	상해진단12주
3	한OO	조합원 제관, 용접	50	두피열상, 좌상, 요추염좌	상해진단03주
4	박OO	조합원 제관, 용접	34	우 종골 골절	상해진단08주
5	김OO	조합원 조립2-A	46	관골공의골절, 안면좌상, 뇌진탕	상해진단04주
6	엄OO	조합원 조립 1	39	뇌진탕, 두피열상	상해진단02주
7	이OO	조합원 성형, 생기	47	우측수부2,3근위지부골절, 다발성좌상 (좌측상지, 우측어깨, 우측흉곽)	상해진단06주
8	조OO	조합원 성형 1 (1공장)	41	요추염좌, 다발성좌상(머리타박, 허리, 전 신타박, 좌측어깨포함한 좌상지)	상해진단03주
9	김OO	조합원 부품 1	47	뇌진탕, 안면좌상, 얼굴의열상(4cm심부)	상해진단02주
10	조OO	조합원 성형 1 (3공장)	48	인주부위입술찢어짐, 수술(아주대) 후입 원	
11	장OO	조합원 조립1-B	29	우측종골 분쇄 골절	일반진단06주
12	이OO	조합원 성형 1 (1공장)	38	이마찰과상(폐임)	일반진단02주
13	김OO	조합원 조립 2	39	치아앞니 1대부러짐, 입술5바늘 꺾임	
14	황OO	조합원 성형 1 (1공장)	40	오른쪽 눈가 4바늘, 왼쪽 팔 타박상	
15	정OO	조합원 수석부지회장	39	두피열상	
16	손OO	조합원 부품 2	45	좌견관절좌상및염좌, 두부좌상, 요추염좌	소견서약02주
17	박OO	조합원 조립2-B	39	왼손목 타박상(부목고정)	
18	정OO	조합원 GIS	46	머리 타박상, CT검사 (이상무)	
19	정OO	조합원 조립1-A	41	이마 찰과상	
20	함OO	조합원 조립1-A	42	오른쪽 팔 타박상, 얼굴타박, 왼쪽팔 찰과상	
21	김OO	조합원 조립 2	50	뇌진탕, 두피좌상, 두피열상	상해진단02주
22	문OO	조합원 부품 1	48	왼쪽팔꿈치, 등 타박상	
23	유OO	조합원 조립2-B	43	이마열상, 요부염좌	소견서 주 약02주
24	정OO	조합원 조립1-A	39	뇌진탕, 요부염좌, 다발성좌상	소견서 주 약02주

연번	성명	소속	나이	상해부위	진단기록
25	박OO	조합원 부품 2	39	요추염좌및긴장,기타척추증,요천추부	소견서 약02주
26	김OO	조합원 조립1-B	42	머리 찌저짐 6바늘괘뎀	
27	한OO	조합원 LNG	36	왼쪽 찌저짐 괘뎀	
28	황OO	조합원 성형 2 (1공장)	49	온몸타박상, 발목 반기부스목발, 허리통증	
29	서OO	조합원 용접	43	귀 6바늘 괘뎀	
30	정OO	조합원 조립1-B	35	등 타박상	
31	김OO	조합원 성형생기	57	머리좌상,두피부창상	소견서
32	최OO	조합원 부품 1	53	허리통증	
33	이OO	조합원 조립 1	59	흉곽의손상(좌11,12늑골부위), 흉곽후벽의 타박상	소견서 약02주
34	이OO	조합원	32	요추부염좌,양측견관절부염좌, 좌측손목염좌,우측발목염좌	소견서
35	최OO	조합원 부품 2	45	손목부염좌및긴장,어깨및위팔, 다리 표재성손상.박리.찰과상.	소견서
36	김OO	조합원 조립2-A	47	왼쪽이마괘뎀 상처	1주
37	임OO	조합원 공작	47	왼쪽다리정강이부분	소견서
38	장OO	조합원 부품 1	44	오른쪽 팔 탐가상,허리이상없음, 등부위타박상 통증지속시 추가검사 요합	소견서
39	박OO	조합원 조립1-A	33	우측수부염좌	소견서
40	신OO	조합원 부품 1	49	좌측견부찰과상및좌상	소견서
41	유OO	조합원 용접	39	요추염좌및긴장,손목염좌및긴장,우측	소견서
42	백OO	조합원 공무	39	무릎타박상,어깨및상완의좌상	소견서

C. 조사결과

1 위법한 직장폐쇄 및 대체근로

- 진상조사단은 이번 조사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음
- **(조합원들이 무장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용역직원 투입 이전부터 외부인원들이 다수 포함된 상태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쇠파이프와 가시망둥이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된 바로는 당시 금속노조 경기지부 사무국장(이선자), 조직부장(박동진)만이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공장 내부에 있었고
 회사측의 근로자들의 무장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경찰 채증결과 근로자들의 무장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회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됨
- **(직장폐쇄의 적법성과 문제점)** 직장폐쇄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어졌을 때 방어적 차원에서 사용되었을 때에만 정당화 된다는 일관된 대법원 판결태도를 고려하고, 회사가 직장폐쇄 공고를 하지 않고 행정관청에만 신고한 상태에서 무장된 병력 약 200여명을 공장에 투입하면서 이미 소지하고 있던 방패, 곤봉은 물론 현장에 놓여 있던 금속부품을 근로자들을 향해 겨냥 투척하여 다수의 부상자를 낸 점, 당시 노동조합의 태업이라는 방식으로 부분적이고 병존적인 쟁의행위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볼 때 회사의 직장폐쇄는 적법하다 할 수 없다고 판단
 -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일정한 행정처분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대응요구가 필요
 - 한편, 진상조사단과 대표이사가 나눈 대화에서 결품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인력을 사용해야 했고 이를 위해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고 한 점은 교섭노력을 더 하지 않고 단순히 휴가 전 재고확보를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문제가 상당하다고 판단
- **(폭력행위의 문제점)**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번 직장폐쇄를 결정하였음. 이 부분은 보다 그 과정을 엄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폭력진압의 결정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가는 현재 SJM과 컨택터스 양자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분명한 조사가 불가피
- **(대체근로의 문제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현재 회사는 외국인인력, 파견인력 등을 통해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상이 확인되었음. 조사당시 외국인 인력 여러명이 기계에 앉아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최소 54명의 파견근로자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심지어 그 중 40여명은 파업이 개시된 날 바로 인력투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쟁의행위 중인 업무에 근로자파견을 금지하는 「파견법」,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노조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음

- **(경찰청 신고내역)** 컨택터스는 서울경찰청과 경기도경찰청에 경비업 허가를 받아서 활동 중이며, 이번에 사건에 문제가 된 곳은 경기도 경찰청에서 허가를 받은 컨택터스 입
- 경찰청 허가신청서 상 내역
 - 서울 컨택터스
 - 법인명칭 : 컨택터스 주식회사
 - 대표자 : 박종태
 -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9 3층(1588-4112)
 - 신청경비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호송경비
 - 자본 : 1억원
 - 경기 컨택터스
 - 법인명칭 : 컨택터스 주식회사
 - 대표자 : 박종태
 - 주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124(031-886-6843)
 - 신청경비업무 :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 자본 : 5천만원
- **(등기부등본 등 확인사항)** 컨택터스주식회사의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 2006. 디택티브브레인저스 주식회사로 등록된 동 회사는 애초 신변보호업등 25개 업종을 등록하였으나 디택티브 씨티플랜 주식회사, 디택티브 브레인저스주식회사로의 상호변경
 - 2008. 9. 9 컨택터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불법도감청설비 탐지업, 해외도피사범 송환 컨설팅, 해외이산가족사람찾기업, 해외커넥션, 해외인력송출업, 위임업무종합조사업, 근로자파견업 등 36개 업종을 추가 등기
 - 2009. 2. 27와 2011. 8. 29 추가하는 등 총 172개 업종을 등기함
 - 본점 소재지는 '강남구 역삼동 837-11 유니온센터 606호' 에서 '동작구 노량진동 270-3 2층',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 다-2002', '수서동724 로즈데일오피스텔 1923호', '역삼동 779번지 3층' 등으로 수차례 변경, 이는 서진호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기재한 거주지 주소와 동일
 - 등기부에 취임 및 사임 등 임원으로 등재되었던 관련자는 10명으로
 - 대표이사 등재자는 이호준, 박종태, 서진호, 박종태로 이중 서진호의 경우 2009. 2. 27.부터 2011. 8. 29.로 최장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
 - * 현재는 박종태가 2011년 8월 29일 취임하여 대표이사로 등기
- **(확인된 사항)** 컨택터스는 각종 파업 현장이나 시위 점거농성 현장에 안전유지 용역경비인력

투입시 무충돌 무폭력 무사고 '3무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전략 수립 후 대응.

컨택터스는 이미 아프간 등 국외의 외국공관 경비 인력을 파견,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발주 해외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의 안전유지 업무 등을 수행

컨택터스는 민간군사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을 표방하고 있음

- 현재 사무실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진 컨택터스가 인터넷을 통해 구인중임이 확인
- 이와 같은 컨택터스는 최근 몇 년간 주요 노사분쟁 사업장에 경호인력 명목으로 인력을 투입 노사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왔음.
- 최근 입수한 컨택터스 소속의 중간관리자 소유의 수첩에는 지난해 5월경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구 KEC와 10월경 문제가 되었던 유성기업, 여주지역 4대강사업 등 각종 사회적 분쟁이 발생한 곳에 인력을 투입한 정황이 확인됨.
- 더군다나 최근 몇 년간 컨택터스가 개입한 노사분쟁 사업장의 경우 전부 노동조합이 해체되거나 기존 노동조합이 소멸되고 새로운 기업단위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기존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들이 단순히 경호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조합 파괴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

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2010.2.4	태업시작						
2.16	직장폐쇄 용역투입						
5.19	직장폐쇄 효력 정지 가처분						
5.25	직장폐쇄 철회						
6.7	금속노조 집단 탈퇴 결정 기업노조 설립	2010.6.4	지노위 조정중지				
		6.21	전면파업				
		6.30	직장폐쇄 용역투입	2010.8.23	직장폐쇄 용역투입		
				8.31	파업철회		
				10.18	직장폐쇄 철회		
						2011.3.25	준법투쟁
						5.13	지노위 조정중지
						5.18	직장폐쇄 용역투입
						5.24	공권력투입
		2011.5.25	파업철회, 복귀선언			6.13	현장복귀결정
		6.13	직장폐쇄 철회			7.14	기업노조 설 립
		7.1	기업노조 설립			8.31	법원조정으로 업무복귀

- 이번 문제가 된 컨택터스의 경우 노사분쟁에 개입하면서 “그동안 은닉과 소극적 대응 방법으로 몸을 대 주며 맞아 주기만 하던 대응에서 탈피, 화려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어필’ 대응으로 현장 대응 방식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과도한 폭력행사를 공공연히 밝혀 온 바 있음
- 아울러 이들의 경우, 살수차, 작전차량, 시위진압용 특수견, 방호복, 방검복, 장방패 등 전문화된 장비구동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또한 이들은 이번 SJM사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찰에 지시에 아랑곳 하지 않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그 사회적 문제점이 상당함
- 경찰은 최초 이들의 폭력사용을 그대로 보고만 있다가 최근 민주통합당의 진상조사 등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자 최근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 하고 2012. 8. 3.부로 감사관실 소속 직원 7명을 안산단원경찰서로 보내 감찰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함
 - 감찰의 주 내용은 컨택터스의 폭력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방조한 것, 경찰 112신고센터가 SJM 여성 노조원의 112 신고를 4차례나 받고도 뒤늦게 대응하고, 이마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철수한 것 등임
 - 경찰은 현재 컨택터스가 미신고 경비원 39명을 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되어 과태료 50만원 부과
 - 경찰은 컨택터스의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 이번에 허가가 취소대상이 되는 것은 경기도 컨택터스로
 -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업체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데, 관할지역이 다를 경우 상호가 같아도 상관없음
 - 따라서 이번에 컨택터스의 허가취소 이후에도 서울법인을 이용한 영업계속이 가능한 상황임

3 막대한 차익발생과 자금의 흐름

- 진상조사단은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컨택터스의 중간관리자의 것으로 보이는 수첩을 입수하였고, 그 안에서 용역직원들에게 일당으로 지급되는 돈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음
-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보통 2단계 이상의 모집단계를 거쳐 인원이 모집되고 통상 1인당 일당으로 약 80,000원 내지 85,000원이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일시	투입장소	모집책		인원	지급액
		책임자	중간책		
2010. 8. 30.	광명총회	양○○	용○ 외 1인	9명	금 720,000원
2010. 9. 1.	거구장	양○○	용○ 외 1인	8명	금 640,000원
2010. 9. 3.	미아역교회	안○○	용○	3명	금 240,000원
2010. 9. 4.	입시설명	장○○	용○○○ 외 1인	4명	금 320,000원
2010. 9. 6.	테크노관리단	이○○	장○ 외 3인	24명	금 1,920,000원
2010. 9. 8.	왕십리집행	선○	정○ 외 2인	12명	금 960,000원
2010. 9. 16.	용인유치권	진○	정○ 외 3인	14명	금 1,190,000원
2010. 9. 19.	오산집행	양○	정○ 외 3인	9명	금 720,000원

- 그러나 앞서 확인한 컨택터스와 SJM간의 거래계약서를 보면, 하루를 기준으로 최대 1인당 약 340,000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컨택터스가 현재까지 11일간 약 200여명을 투입한 경우 용역직원들에게 지급한 일당을 빼고, 약 572,000,000원의 차익을 보았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됨.
- 이와 같은 막대한 수익을 보는 컨택터스가 그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4 권력의 비호아래 성장한 폭력산업

- 이번 조사 결과 폭력이 상품화 되어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y)을 표방하는 기업이 등장하고, 이들이 노사문제, 사회갈등의 현장에 투입되어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음.
- 우리 진상조사단은 이와 같은 폭력산업 등장의 배후에 현재의 막강한 정치권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음
- 이번 SJM사건의 당사자인 컨택터스는 지난 2006년 자본금 2억원에 종업원 수 5명으로 출발한 기업에 불과하였음.
- 이와 같은 기업이 지금 외서는 통상 300여명에서 3000여명까지를 동원할 수 있는 조직규모를 가지고 있게 되었음.
- 또한, 독일산 살수차, 십 수대의 작전용 차량, 시위진압용 특수건, 무인헬기까지를 보유한 회사로 성장

- 자금면에서도 2008-2009년 사이 매출이 233.4%나 성장하는 매우 빠른 기업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현재 컨택터스의 회장으로 알려져 있는 문성호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출신으로 현 새누리당의 중앙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경기 성남에서 출마한 바 있음.

이 름	문성호(文誠皓)
생년월일	1960년 7월 8일
현 직	새누리당 중앙위원
병역사항	면 제
학 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직 업	재원종합건설(주) 부회장, (주)컨택터스 회장
경력사항	제 4·5·6·7대 한나라 정치대학원 제5기 동문회 회장 한나라 정치대학원 기수별 회장단 총회장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총간사 제17대 이명박대통령후보 특별직능위원회 부위원장 2008 한나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수석정책특보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 특별보좌역 국가발전 전략연구회 위원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청년분과·산자분과 부위원장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총동무원 공로상·감사패 수상 제17대 이명박대통령 인수위원회 감사장 수상 2010년 지방선거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 후보 (성남시 카선거구(서현 1동·2동))

- 이와 같은 점은 폭력행위를 매매하는 기업이 어떻게 정상적인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아울러 이번 SJM에서의 사례에서와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공권력이 그 행위를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비상식적인 상황을 일정하게 설명해 준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앞으로 폭력기업의 성장과 비호에 부당한 권력의 힘이 작용한 바는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우리 민주통합당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첫째, 비교적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던 SJM은 부적절한 이유로 직장폐쇄를 결정하기로 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함에 있어 외부 경비용역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2012. 7. 25. 컨택터스를 경비업수급업체로 선정하고 투입인원은 1인 내지 3000인의 범위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수만큼을 공급하기로 하며 1인당 1일 34만원과 별도 숙식제공 약속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둘째, 2012. 7. 26. 회사는 경찰에 06시에 인력투입을 신고하면서 별도로 직장폐쇄를 공고하거나 노동조합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셋째, 2012. 7. 27. 상오 05:10 회사는 비무장 상태에 있던 조합원들 약 100여명이 회사 내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무장한 컨택터스 직원 약 200여명을 회사 내로 투입시켰고, 그 과정에서 무력진압이 벌어졌다. 당시 조합원들은 공장 내로 쫓겨 갔고, 그러면서 낙오된 조합원들은 컨택터스 직원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당해 상해진단 3주를 받는 등의 부상을 당한 바 있다. 아울러 공장내부로 피신한 조합원들이 2층으로 올라간 철제 이동로에 올라가자 1층에 위치한 컨택터스 직원들은 1층 공장에 생산중인 벨로우즈 부품 또는 조립된 제품 1000여개를 조합원들을 향해 겨냥투척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약 42명이 부상을 당했다. 우리 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당시 투척된 벨로우즈는 철제 방화문에 1cm~7cm의 상흔을 남길 정도의 파괴력을 갖는 가히 인마살상 수준의 무기와 다름없었다.
- 넷째, 당시 조합원들과 인근을 지나는 주민들은 컨택터스의 폭력진압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서 112센터로 전화를 해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구조요청이 필요한 '코드1'이 아닌 '코드2'로 출동명령을 내렸고, 출동경찰은 사용자와 컨택터스의 업체측 담당자의 말만 듣고 돌아갔다.
새벽 05:30경 경찰 3개 중대가 배치되었으나 이들은 컨택터스의 경비배치신고서 위반행위,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서장은 이와 같은 상황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거나 중대장 1인이 무전으로 사실을 알려와 알았다거나 나중에 팔에 피를 흘리며 나오는 근로자를 보고 알았다는 등 일관되지 않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 다섯째, 노동조합 사무실은 현재 불법적으로 폐쇄되어 있고, 현재 내부에는 법률이 금지하는 쟁의중 대체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우리 진상조사단은 이번에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 첫째, 우리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태를 목도하면서 폭력을 상품화 하고 이를 거래하는 기업

이 우리사회에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들은 매우 전문화된 장비와 실력을 자랑하고 있었고, 노사관계에 개입하면서 과거의 수동적인 대응 대신 적극적인 제압을 목적으로 한다고 자랑을 늘어놓기까지 했다.

□ 둘째, 우리는 이와 같은 공인된 민간폭력이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불안에 빠지게 될 것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군사기업을 표방하는 컨택터스와 같은 기업들이 지금 여러 활동 중임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폭력을 사고파는 일이 공공연히 가능해 진다면 결국 돈 있는 자가 폭력을 사고 그 폭력이 돈 없는 자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는 억울한 일이 많아질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불공정한 사회에서 불안함만을 더 키워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셋째,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주었다. 얼마 전 수원에서 벌어진 납치여성 살인사건의 원인으로 경찰의 늦장대응이 사회여론의 지탄이 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스스로 쇄신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으나 그런 약속이 얼마나 지났다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벌이고 말았다. 노동자가 다치고 피 흘리고 자가용을 나눠 타고 병원을 향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팔짱만 끼고 있었고, 응급차 한 번 불러주지 않았다.

이처럼 거듭된 공권력의 오만한 태도에 우리 국민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차체에 경찰은 보다 뼈를 깎는 쇄신과 재발방지계획을 국민 앞에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와 함께 이번 사태에 관한 책임자의 엄중문책과 경찰 수뇌부의 책임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넷째, 우리는 이번 사태를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혹을 버릴 수가 없었다.

군사기업을 자처하는 비상식적인 기업이 등장하고 이들이 폭력을 팔아 막대한 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실상 경찰과 노동부와 같은 권력기관의 비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컨택터스는 여당의 주요직책을 맡고 있는 자를 회장으로 모시고 사업을 벌여왔다. 이와 같이 이들이 부당한 정치권력과 일정한 관계에 놓여 있고 그에 의존하여 법을 초월하는 폭력을 행사해 부를 창출해 왔다면 이는 마땅히 사회적 부조리를 없애고, 국민 전체의 안전과 평안을 지켜야 할 정치 지도자로서의 기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임은 분명하고 나아가 그 거래관계 역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 진상조사단은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을 확인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아가 전체 국회 차원에서 폭력용역의 근절을 위한 청문회 실시 등을 적극 제기해 나갈 것을 당에게 요청함.

현대판 귀족의 사병 “경비용역” - 경찰감독행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김남근 /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변호사

I. 서 : 현대판 귀족의 사병과 법치주의

자력구제 내지 자구행위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한 때에 공권력의 발동에 의하지 않고 자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국가권력이 확립되지 않았던 고대국가 이전의 유물이다. 고대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자구행위라는 명분으로 귀족들이 사병(私兵)을 두고 가지 토지와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려 하였다. 이러한 귀족들의 사병에 의한 질서는 그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수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법치적 규범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백성은 상시적으로 무단적인 사병의 폭력에 시달리게 되고 이러한 사병은 권력장악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공동체의 질서는 혼돈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기틀을 잡는 일은 이러한 귀족과 호적의 사병을 혁파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얼마전 인기리에 방영된 “선덕여왕”이란 드라마를 보면 선덕여왕이 고대국가적 기틀을 잡는 일은 사병의 혁파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확립되고 법적 구제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는 법적 판단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해결되게 되었다. 그래서, 고대국가의 성립 이후에는 예를 들어 로마법의 경우에도 자력구제란 자기방위를 위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행해지는 것은 금지되었다. 근대법치국가에는 민사상의 청구권을 사력(私力)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우리 형법 제23조에서도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공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행사하기 불가능한 경우란 것이 있을까?

근대를 지난지도 이미 200여년이 넘고 있는데, 여전히 법정절차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특정 사병집단의 물리력에 의하여 재산을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소위 “경비용역”이라는 집단이다. 경찰을 흉내내는 물리력을 갖추고 각종 분쟁에서 공권력이 하지 못하는 폭력을 동원해서 분쟁을 해결해 주고 있다.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불법점유이기 때문에 노조원 해산이나 세입자 강제퇴거를 위해 경비용역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불법파업이라면 민사적으로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가처분을 내고 간접강제 등의 방법으로 또는 업무방해죄의 불법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는 문제이어서 형법 제23조에 의한 자구행위가 인정되기 요건인 법정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불법점유라면 민사적으로 법원에 명도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고 역시 불법점유를 이유로 경찰공권력을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서 법정절차가 불가능한 일일 수 없다. 사실 불법파업이나 불법점유 이전에 이러한 법정절차를 밟아도 원하는 법적 판단을 얻기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사병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경비용역이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경비용역이 동원되어 노조원들을 공장 밖으로 쫓아 낸 후 노조탈퇴를 하거나 사용자에게 우호적인 신노조에 가입해야 들어와 일을 하게 하는 등 사실상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경비용역이 활용되고 있고, 개발현장에서는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수단으로 경비용역이 동원되고 있다.

고대국가 이전도 아닌 현대사회에서 왜 이러한 현대판 사병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가능할까? 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가 이러한 원시적인 사병의 폭력을 눈감고 있는 것일까? 전대근적인 경찰행정이 이러한 원시적인 폭력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투입되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항상 경제적 힘을 가진 사용자가 개발사업자를 편든다는 비난을 사기 쉽고 많은 경우는 실제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진 쟁의행위이거나 세입자의 점유인데도 경찰력이 투입되어 비난을 산 경우도 많이 있다. 결국, 공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쟁이라면 경찰공권력이 해야 할 일을 경비용역이 대신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도 현대 법치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일이고, 공권력이 투입될 수 없는 일인데 경비용역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해결하려 한다면 더욱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의도적인 팔짱행정(방임행정)을 개혁하고 제도적으로 경비용역의 폭력을 근절하는 것은 현대 법치국가를 유지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II. SJM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감독행정의 문제점

1. 경비업체의 경비업무에 농성해산이나 조합원의 강제퇴거와 같은 타인에게 위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해야만 하는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 폭력행사 문제는 항상 진실공방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일 수 있으나 텅빈 공장을 경비하거나 공장의 출입을 경비하는 차원의 배치가 아니라 공장안에 이미 농성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공장 밖으로 강제퇴거하거나 농성해산을 위하여 위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경비업법의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경비업법 제15조의 2와 제28조는 명시적으로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 및 이를 교사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2)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개념정의하고 있고 “경비”는 그 개념 자체로 예방적, 방어적 업무를 하는 말하고 이를 초과하여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경비업법 제15조의 2에 위반되어 제28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경비업자가 징역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이다.

(3)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표 제15호서식 : 경비원 배치 신고서] ⑦항 : 경비의 목적 또는 내용, ⑧항 : 배치 경비업무 등을 필요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장(경비업법에서는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체가 어떤 업무에 배치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배치단계에서 농성해산이나 강제퇴거 등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업무일 경우에는 배치중단이나 폐지 등 경비업법 제24조 제2항이 필요한 명령을 발했어야 하는 것이다.

2. 배치신고 및 배치상황 파악의 문제

(1)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단서 및 제1.호 행정안전부령(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에 배치신고를 해야 한다.

(2)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표 제15호서식 : 경비원 배치 신고서] 에는 ⑨ 경비원 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 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장은 배치되는 경비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경비원 결격사유자 즉, 미성년자나 폭력전과자 등을 확인하여 이를 배치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아래 제4항의 인권·예절 교육 등 경비원 신입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3) 관할 경찰서장은 위 [경비원 배치신고서] ⑤ 배치일시를 경비업체가 허위로 신고하여 정확한 배치시간을 알지 못하여 배치 시의 현장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통상 배치 시간 전에 이미 정보과 형사 등이 배치되어 상황을 미리 보고하고 있고, 위와 같이 [경비원 배치신고서] ⑦, ⑧항의 경비업무의 목적 등을 통하여 적어도 조합원들과 마찰이 예상되는 배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장구사용의 문제

(1)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는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하되 근무 중에 한하여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제21조는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여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소화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비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필요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3)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분사기를 사용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인권교육 등 경비원 신입교육의 이수문제

(1) 경비업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일반경비원의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에 의하여 노사분규 현장 등에 배치되는 경비원은 예절 및 인권교육 등 총 2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경비원 교육을 받지 않거나 허가된 장구 이외의 장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비업법 자체의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나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업무를 통하여 이러한 교육받지 않은 경비원이나 허용되지 않은 장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경비업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렸어야 한다.

(3) 알고도 하지 않았다면 감독부실 내지 직무유기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5. 관할 경찰서장이 경비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필요한 명령”으로서의 위법행위 중단명령이나 배치폐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비업법 근거

(1) 경비업체의 경비업법 위반행위를 발견하고도 경비업허가 취소시까지 배치폐지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현행 경비업법 제24조 제2항에도 관할경찰서장이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현황이나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

(2) “필요한 명령”에 경비업법 위반행위의 중단이나 배치중단명령이나 폐지명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다면 경비업법 제24조 제2항은 아무런 의미없는 규정이 되어 버린다.

(3) 법개정을 통하여 경비업법 제24조 제2항의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업무의 내용과 필요한 명령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나 현재의 경비업법 해석을 통하여도 “필요한 명령”에 경비원 결격자나 경비원 교육을 받지 않은 경비원의 배치제외, 경비업법 위반 행위 중단, 허용받지 않은 장구사용의 중단, 경비업법 위반 상황이 심각할 경우 배치폐지 명령 등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어서, 경비업법 허가가 취소되어야지만 경비업체의 배치폐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경비업법 제24조 제2항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거나 변명에 불과하다.

6. 경비업체에 속한 경비원들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경비업법의 해석과 상관없이 당연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항의 다중의 위력으로 형법상의 폭력. 상해죄를 범하는 것이어서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는 범죄이고, 허용되지 않은 장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상해를 가하는 것이어서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는 범죄이다.

III. 노사분규현장과 재개발현장에서 드러난 경비구역의 문제점

1. 노사분규 현장에서의 경비구역의 문제점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만도기계 등 많은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에 시설경비업체들이 배치되고 있는데, 유성기업 등 몇몇 사례 외에는 대부분 허가받은 경비업체가 배치되고 있으나 허용되지 않은 방패나 장봉, 헬멧 등 허용되지 않은 장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노조원 해산과 같은 방어적 개념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심지어 쌍용자동차 사건에서처럼 경찰이 보는 앞에서 노조원들에게 쇠붙이를 던지는 등 사실상의 진압작전에 참여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2. 재개발 또는 각종 개발현장에서의 경비구역의 문제점

개발현장에서의 경비구역업체의 특징은 아예 시설경비업 허가도 받지 않고 오로지 건물철거 면허만을 받은 업체들이 건물철거 과정에서 철거업무를 방해한다는 목적으로 세입자 등 인명에 대한 강제퇴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물리력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건물을 물리적으로 철거하는 업무와 인명을 다루는 업무는 전혀 질을 달리 하는 것으로 후자의 인명을 다루는 업무는 경찰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이고, 철거현장의 방어적 차원의 경비업무도 허가받은 경비업체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을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안타까운데, 최근에는 철거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경비업 허가를 받고 있는 추세이다.

IV. 외국의 경비업법과의 비교법적 연구

1. 일본의 경비업법

우리 경비업법이 일본 경비업법을 전범으로 한 것이어서 유사한 규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일본 경비업법의 특징은 우리의 시설경비업무가 시설경비업무와 혼잡장소경계업무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경비구역의 폭력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노사분규 현장, 재개발 현장 등은 일반 시설경비업무가 아니라 혼잡장소경계업무에 해당하여 별도의 규율을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경비업법 제8조에서 경비원이 타인의 권리 및 의무를 침해하거나

개인 혹은 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간섭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경비원의 결격사유로 우리처럼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단적, 상습적으로 폭력적 불법행위 기타 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행정규칙에서 정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조직폭력배 등이 경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과 같은 면허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일반경비원에 대하여도 검정을 실시하여 경비원의 능력과 지식을 테스트하고 있다.

2. 미국의 경비업법

미국 경비업 법제의 특징은 일반 경비원의 경우에도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사후적으로도 교육 등을 통하여 경비원의 자질향상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비원은 업무수행 중에 반드시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 경비업무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면허를 취소당하면 경비원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경비원 스스로도 법령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우리처럼 노사분규나 재개발 등 일정 경비대상에 배치 전에 일정 시간의 경비원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것과 질을 달리하고 있다.

3. 독일의 경비업법

독일 경비업법의 특징은 시설주가 자신의 회사에서 경비계약을 수행하게 할 때는 경비업무의 수행기간 동안 경비업무로 인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의 하한선도 정하고 있다. 독일도 경비원의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급당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여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4. 프랑스의 경비업법

프랑스 경비업법의 특징은 시설경비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활동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방에 대한 검사는 보는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중대한 상황에서 몸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 그 업무는 동일한 성의 경비원이 해야 하고 몸수색을 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경비원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1,500명 이상의 관중이 모이는 스포츠 시설, 오락, 문화공연이 조직되는 시설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등 중대한 경우에는 경찰관의 통제하에 동의를 받아 몸수색을 할 수 있다.

V. 경비업법상의 경찰감독의 책임행정 강화방안

1. 배치신고제에서 배치허가제(배치명령제)로

가. 노사분규 현장, 재개발정비사업 현장, 각종 개발행위 관련 분쟁현장에 투입된 경비업체의 경비원들이 “경비”라는 예방적, 방어적 개념의 업무 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집단적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업체가 감독관청인 관할 경찰서장에게 24시간 전에 배치신고만 하면 될 뿐이고, 별도로 관할 경찰서장의 배치허가(명령)를 받아야만 경비원을 경비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배치신고를 받아도 24시간의 짧은 기간 내에는 폭력전과자, 미성년자, 경비업법 위반 경력자 등의 결격자를 발견하여 이들에 대한 배치 제외명령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여 경비원 결격자들이 대규모로 경비원으로 배치되고 있고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현장에서의 경비원들의 경비업법 위반행위를 제때에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라. 현행 배치신고서에는 경비목적은 경비업법 제2조의 시설경비 등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배치허가제를 실시하면 허가를 받고자 하는 배치신청서에 경비목적은 세분화하여 노사분규, 재개발, 소유권 또는 관리권 분쟁 경비대상의 경우에는 그 경비목적의 성격에 맞게 경찰감독행정을 전문화할 수 있다.

2. 배치폐지 명령, 장구회수 명령, 위법행위 중단 등 “필요한 행정명령”의 명확화

가. 관할 경찰서장이 경비업체의 경비업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도 배치신고를 하지 않고 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치폐지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경비업체의 허가 취소시까지 장기간에 걸친 불법적인 경비원들의 배치상태가 계속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나. 현행 경비업법 제24조 제2항에도 관할경찰서장이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현황이나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으나 “필요한

명령”에 경비업법 위반행위의 중단이나 배치중단명령이나 폐지명령이 포함되는지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경비업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관할 경찰서장이 경비업법 위반행위의 중단이나 배치폐지명령을 내리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권한의 내용이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엄격한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는 등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3. 경비업자의 경비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불비

가. 경비원 교육

경비업체들의 예방적, 방어적 개념의 경비업무를 넘어 타인에게 위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경비업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행정지침인 경비업법 시행규칙에는 경비원들이 배치되기 전에 인권·예절 교육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나. 장구(무기 포함)의 제한된 사용

경비업법과 그 시행규칙에서는 경비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에 대하여 경정·경봉·소화기 등 제한된 장구만을 사용하고 소화기 사용의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여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커녕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의 부과조항도 없어 경비업체들은 이러한 경비업법 위반행위를 관행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4.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노조원 해산이나 세입자 강제퇴거 등을 도급하거나 지시하는 시설주에 대한 제재 불비

가. 시설경비의 경우 시설주(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비업체에게 경비업무를 도급주거나 경비업체에게 방어적, 예방적 경비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것을 도급하거나 지시하는 경우가 많

다. 노조원 해산이나 세입자 강제퇴거 같은 업무는 필연적으로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경비법상의 “경비”라는 예방적, 방어적 업무에 포함될 수 없는 업무이며, 경비업법 제15조의 2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에서 시설주인 사용자나 재개발 등 개발분쟁 현장에서의 시설주인 건설회사 등은 그 자체로 경비업법 위반행위인 노조원 해산이나 강제퇴거 행위를 완료하면 얼마나 빨리 했느냐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약정하는 등 경비업법 위반행위를 도급하거나 지시하거나 하는 행위도 많고 재개발 현장 등에서는 경비업 허가를 가지 않고 단순한 철거면허만 보유한 업체에게 세입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업무를 맡기고 있어 시설주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

나. 시설주가 노조원 해산이나 세입자 강제퇴거 등과 같은 그 자체로 경비업법 위반행위를 도급·지시한 경우에는 경비업법 제15조의 2 위반행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폭력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다. 그러한, 이러한 구체적인 공모, 교사, 방조행위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무허가 경비업자 등에게 이러한 경비업무를 맡기거나 도급이나 지시내용 자체에 노조원 해산이나 세입자 강제퇴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5. 경비업무 중 허용되지 않은 장구의 사용 문제

경비원의 업무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경비업법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구 이외의 무기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경비원들이 경비대상 시설에 있는 인명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경비원들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폭력·상해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 하여 경비업체의 시설경비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폭력현상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6. 경비업 허가의 요건 강화

가. 경비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별표1]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기준은 경비인력 20명 이상, 기준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자본금 5,000만원,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기본 경비인력수 이상의 제복 및 장구) 등을 갖추는 것이다. 허가신청시 갖추지 못한 인력이나 장구 등은 허가후 1개월 후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비원을 지도하고 현장에서 선임 배치되어야 하는 경비지도사를 갖추는 것은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고, 경비원의 경우에도 일정 경력이상이나 정규직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고, 자본금도 5,000만원은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규모의 금원이다.

나. 이렇게 허가의 요건이 부실하다 보니, 2000년에 1,800여개 이던 경비업체가 2010년에는 3,473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경비업체는 대부분 영세하여 정규직 고용인원은 10여명을 넘지 않고 대부분은 사건을 따낼 때마다 경호협회 등의 연락망을 통하여 하루 만에 순식간에 1,000여명을 임시고용하여 경비원을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영세한 경비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니, 해결사처럼 물리력을 행사하여야만 되는 노조원 해산이나 세입자 강제퇴거와 같은 불법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용역도 서슴지 않고 도급받고 있고, 더욱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빨리 해결할수록 성공보수금을 더 많이 받는 불법목적의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다. 시설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여 자본금 규모를 늘리고 일정수의 경비지도사와 3년 이상의 경비원 등 경력 경비원을 정규직으로 일정 수 이상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등 경비업 허가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또한 경비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필요한 허가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7. 경찰의 팔짱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경비업체들의 폭력행위, 경비업법 위반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식의 무능행정 내지 방임행정을 일관하고 있어 이러한 무능행정, 방임행정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경찰행정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경비구역의 폭력 문제는 개발현장이나 노사분규현장에서 매년 문제가 되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도 국토해양부나 국토해양위원회나 고용노동부나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만 논란이 될 뿐 막상 행정안전부나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으니 경찰감독행정의 문제나 경비업법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논의는 국회에서조차 없었다.

VI. 맺음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대표적인 속어가 “법 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는 말일 것이다. 우리 사회도 현대국가로 들어선지 한참 되었지만 이러한 속어를 실천하는 집단들이 아직도 활약하고 있다. 이른바 경비용역업체이다. 경비업법 제2조는 시설경비업무를 “도난, 화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하여 예방적, 방어적 업무에 한정하고 있고, 제15조의 2는 경비업무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물리력을 행사해야만 가능한 농성중인 노조원 해산이나 세입자 강제퇴거 등의 업무를 경비업체들이 도맡아 하고 있다. 경비업무의 특성상 민원인과의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노사분규 현장이나 재개발현장에 배치되는 경비원은 인권·예절 등 2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용하는 장구도 경정·경봉과 소화기로 제한되고 소화기는 별도 총포·화약·도검류 단속법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없이 소화기를 난사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고 허용된 장구가 아니라 방패, 헬멧, 심지어 쇠파이프, 장봉 등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규를 위반하여도 형사 처벌규정은 전혀 없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점이다. 수억원의 성공보수금이 오가는 사건에서 경비업자로서는 감수해도 그만인 너무도 미미한 처벌규정이다.

감독감청인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행정도 허점투성이다. 경비업법 제18조에서 노사분규나 재개발현장에 경비원이 배치되는 경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배치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폭력전과자, 미성년자 등 결격자가 있는 확인하여 결격 경비원의 배치를 제외시키고 노조원 해산, 세입자 강제퇴거 등 물리력이 수반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경비업법 제24조는 관할경찰서장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경비업법 위반행위가 있으면 바로 경비업체에 직접 “필요한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나, 경비원들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항상 관할 경찰서장은 몰랐다고 하고 허용되지 않은 장구의 회수명령, 물리력 행사행위 중지명령, 배치중지 명령 등이 내려진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노사분규 현장이나 재개발현장에는 항상 정보과 형사들이 배치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왜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폭력이 행사되는 시점에는 항상 현장주변에 경찰이 없다는 것인지, 혹시 미리 피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렇다 보니 물리력, 더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여 노조원 해산이나 세입자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더라도 한참 뒤에 경비원들과 대항한 노조원이나 세입자가 쌍방폭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유아무야 끝나 버리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법치주의를 거부할 수 없는 사회운영원리로 받아들여지면서도 한편 이러한 현대판 귀족의 사병인 경비용역의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이다. 이번 SJM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감독행정도 혁신하고 경비업법도 크게 손질하여 우리도 부끄럽지 않은 문명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경비업법 일부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가. 노사분규, 재개발, 소유권 내지 관리권 분쟁이 있는 경비대상 등 일정한 경우 배치신고만이 아니라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명령) 제도를 신설하고(안 제18조 제2항) 경찰관서장의 경비원 결격자의 조사의무를 신설하며(안 제18조 제3항), 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만이 아니라 허위의 배치신고나 경비업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배치폐지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4항)

나. 일반경비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구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함.(안 제16조, 제28조 제2항 제7호)

다. 법 제13조에 의한 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경비업무에 배치한 경비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 제4항 제4호.)

라. 경비업원들의 경비업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법행위 중지나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명령에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함.(안 제24조 제3항, 제28조 제2항 제8호.)

마. 시설주가 무허가 경비업체에 경비업무를 도급, 위탁, 파견하거나 허가받은 경비업체에게 농성의 해산, 강제퇴거 등 제3자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도급, 지시한 경우에는 경비업자와 그 소속 경비원이 경비업무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경비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26조 제3항 신설)

바.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안 제28조 제2항 제7호, 제8호, 제4항 제3호, 제4호, 제29조 제2항)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단서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제3항을 신설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8조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에(제3호의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아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호의 가목에 규정한 시설경비 업무 중 다음 각목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가.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나. 주택재개발 · 재건축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장소

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마. 건물 · 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 · 운영 · 관리 · 점유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바. 기타 행정안전부령에 의하여 지방경찰서장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③ 제2항에 단서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장은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법 제10조 제1,2항의 결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결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제외하고 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배치명령 전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법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복장 · 장비 등) ① 경비원의 복장 및 출동차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 · 경봉 · 분사기 등으로 하되 근무중에 한하여 이를 휴대할 수 있고 그 규격 · 재질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 · 도검 · 화약류 단속법에 의하여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24조에 다음과 같이 제3항을 신설한다.

제24조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들이 경비업법,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중지나 배치폐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법제2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③ 시설주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지 않은 경비업자에게 제2조의 경비업무를 도급·위탁하거나 무허가 경비업자로부터 과전을 받은 경우에는 무허가 경비업자와 그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과정에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시설주가 허가받은 경비업자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도급하거나 지시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음과 같이 제28조 ②항과 제29조에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제28조 제④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제4.호를 신설한다.

제28조 ②

7. 경비업무의 수행 중에 제16조 제2,3항에 위반하여 허용하지 않은 장구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자.

8.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장의 위법행위 중지명령이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④

3. 제18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자

4. 법 제13조에 의한 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경비업무에 배치한 경비업자

제29조 ② 일반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제16조 제2,3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장구 이외의 장구나 무기를 휴대하고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 제350조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노동현장 용역폭력의 문제점 및 경비업 개정방안

임선아 /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1. 노동현장 용역폭력의 문제점

1)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

- 감시
- 현장 출입통제
- 홍보물 배포, 집회 등 일상적 조합활동에 대한 물리적 저지
- 과업상황에서 두드러진 용역투입
- 허가된 경비업체와의 도급계약 형식 외 일용직으로 직접 고용해 경비업법의 규제 탈피

2) 감시 및 채증 등 탈법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격권 침해

- 일상적이고 집요한 감시 - 재능/학습지노조 사례
-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목적 - 침소봉대, 고소·고발 자료
- 심지어 일상적인 근로활동 감시까지 - 공장 라인 옆에서 상시 감시

3) 폭력사태를 유발하여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형사처벌 등 유도

- 용역경비들을 투입하여 현장출입을 봉쇄하거나 집회를 금지하는 등 조합원을 자극하여 물리력 행사를 유도(용역경비들과 다수 조합원들 충돌상황)
- 쌍방 고소 사례 -> 용역경비는 불기소 및 신원확인된 한 두 명만 벌금형, 조합원은 다수 형

사처별 및 징계

-조합원 징계 - 용역경비 공동폭행 이유로 해고조치

4) 폭력행위

-최근 SJM 사례와 같이 용역들이 극단적 폭력행위를 통해 사용자 이익에 복무함

5) 소결

결과적으로 조합원 이탈로 인한 노조의 해체, 노동자 길들이기 및 어용노조 띄우기 목적, 사용자의 계획적 활동 내지 적극적 공세

2. 사용자의 용역 경비사용에 대한 규제 방안 검토

가) 현행 법률 체계 및 한계

용역경비의 노동현장 개입과 관련된 법률체계는 기본적으로 경비업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합법적 경비업의 조건, 경비업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규제조항 및 의무위반시 제재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용역 경비를 이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고용한 용역경비가 시설보호가 아닌 근로자의 일상노동 및 조합활동을 감시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현행 경비업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만으로는 대응함에 한계가 있다. 사용자는 용역경비들을 직접 일용직으로 고용하거나, 무허가 경비업체와 계약을 함으로써 경비업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자의 의무위반시 제재조항이 있을 뿐이고, 경비업자의 의무위반을 지시한 시설주 및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용역경비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할지라도 사용자의 이와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요건에 해당함을 노동자·노동조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

현행법의 한계는 경찰 및 공권력이 용역경비들의 불법적 노동현장 개입에 대하여 방관하거나 간접적으로 조력하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즉 사용자나 용역경비들이 조합원들을 고

소· 고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즉각 대응하는 반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용역경비들의 폭력행위를 고소· 고발하는 경우에는 용역경비들의 '인적 사항 불특정' 등을 이유로 무혐의로 종결하며,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용역경비들의 불법에 대하여는 수수방관함으로써 침묵을 통한 방조자가 된다.

나)경비업법 개정 방안

①경비업자의 의무 강화

ㄱ. 사업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인적사항을 기록한 명부 작성 및 이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 허용

경비업자는 사업장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배치된 경비원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명부에 기록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경비업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사업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인권보호 조치, 명확한 업무범위 등을 포함한 사전 교육 강화

경비업자는 사업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업무 범위 및 구체적인 방법, 인권보호조치에 관하여 미리 교육하여야 한다.

② 경비원의 폭력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처벌 강화

ㄱ. 경비원 결격 조항 추가하여 경비업법 위반하여 유죄판결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경비원 취업 금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ㄴ. 경비원 교육의 강화 및 명부에 기재된 경비원만 현장에 배치

경비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경비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비원 명부에 없는 경비원을 사업장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경비원이 사업장에서 일반인에게 혐오감 및 위협감을 주는 문신, 복장 등을 노출시키는 행위 금지하여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지 못하도록 함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업장에서 사회통념상 혐오감을 주는 문신·복장·두발을 노출시켜 폭력단체조직원임을 암시 또는 과시함으로써 사람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ㄹ. 경비원의 복장 통일, 소속 및 직책을 표시한 명찰 패용 의무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직무 수행 중에는 경비원임을 표시하는 복장 및 증표를 착용하게 하고, 소속회사를 표시한 이름표를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ㅁ. 휴대할 수 있는 장비 종류의 한정 및 그에 대한 신고의무, 장비에 대한 임의 개조 금지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를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신고한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ㄴ. 경비업무 수행시 인권보호 조항 등 준수하여야 할 업무수칙 규정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에 인권보호조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업무수칙을 마련하여 미리 교육하여야 한다.

ㄷ.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 강화

경비원이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 법을 위반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 제350조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③ 시설주 및 사용자(도급인)의 의무

ㄱ. 시설주가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용역경비를 의뢰하는 행위 금지

누구든지 허가받지 아니한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ㄴ. 도급인인 시설주 및 사용자로 하여금 도급받은 경비업체와 그 소속 경비원이 제3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시설주는 도급받은 경비업자와 그 소속 경비원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경찰의 감독 책임 강화

사업장에서 경비원의 과도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이 사업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그러한 위해를 가할 위험 있는 경우 경찰관이 즉시 개입하여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물리력의 행사를 제지하도록 의무규정을 경비업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겠다.

경찰관은 경비원이 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비업무수칙을 위반한 물리력 행사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그러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입하여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경비원의 직권남용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개발 사업에서의 용역폭력 구조 및 근절방안

이원호 /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

최근 '컨택터스'라는 경비용역이 진압경찰과 유사한 복장, 장비를 소지하고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용산참사 당시 현장을 누비며 POLICIA라고 적혀있는 사제 방패를 든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경찰로 오인되었던 철거용역들이었다. 당시 철거민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남일당 건물 3층에서부터 집기들을 불태우며 연기를 위로 올려보냈던 용역들과 경찰과 함께 물대포를 쏘던 용역들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¹⁾

무리한 진압을 한 경찰도, 살인적인 개발을 밀어부친 건설사도, 용역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다. 오직 철거민들만이 모든 책임을 지고 3년반째 감옥에 있다.

처벌받지 못한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을 폭력진압 했고, 용산4구역 시공사 삼성과 대림은 강정에서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용역깡패들은 노동자와 철거민들을 폭행하며 활개들 치고 있다.

1. 용역깡패 = 경비용역? 철거용역?

컨택터스, CJ시큐리티, TPS 씨큐리티, 씨큐어가드, 디펜원...

다원, 참마루, 삼오진, 유에스, 호람, 대길...

이름만 들어도 경비업무를 짐작할 수 있는 전자의 업체들은 경호경비업무를 전문으로 '경비

1) 물포 쏘는 용역 2명 중 1명은 징역6월에 집유1년, 1명은 벌금 150만원 / 불 지른 용역 5명 중 1명은 징역6월에 집유2년, 나머지는 벌금 200만원 판결.

업 면허를 가지고 활동하는 회사들이다. 홈페이지에서 이 회사들이 열거해 놓은 최근 실적들은 '박근혜대표 근접경호, 문희준 생일파티 경호, 빅뱅 악수회' 같은 '요인경호'와 '○○주주총회, ○○법당 출입통제, 계룡대축제 경호' 등 '시설 및 행사경호' 그리고 '충청 크레인노조 대규모 인원투입, (주)경상병원 대규모 인원 투입, 한진중공업 (주) 시설경비 경호' 등 노사분쟁 경호경비 업무들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이 재개발현장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실적은 '○○재개발구역 총회 경비' 정도 외에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후자인 다윈, 참마루, 삼오진 등은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이름들이지만, 철거민들에게는 악명 높은 업체로, 재개발현장에 덩치들로 출몰하는 유명 용역회사의 이름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 뒤에는 '건설'이 붙는다.

노동현장에 들어오는 용역업체들이 경호업무를 하는 경비업체라면, 재개발 현장에 들어오는 용역업체는 철거업무를 하는 건설업체들이다.

즉 개발현장에 출몰하는 이들 업체들은 '경비업(경찰청 관할)'을 주 업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가진 '철거업(국토해양부 관할)'을 주 업무로 하는 철거업체들이다. 그리고 개발현장에서의 '용역깡패'에 의한 폭력은 '경비용역'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건설'의 이름을 가진 '철거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경비업체 '(주)씨큐어가드' 홈페이지 메인화면



개발지역 철거용역의 대표적인 업체인 '참마루 건설'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입산' , '적준' 의 후예들

이러한 철거용역 회사의 시초는 1986년 12월 설립된 '(주)입산개발'로 알려져 있다. (주)입산은 태옥건설, 신한환경 등 3개 용역사를 보유하여, 사당동, 돈암동, 동소문동의 철거권을 따내면서 대표적인 철거용역 회사로 성장했다. 이후 입산에서 일했던 이들이 나와 1990년 '(주)적준개발' 용역을 만들면서 철거용역 회사로 이름을 날리며, 90년대 중반부터 재개발지역의 철거업무를 독점하다시피 했다. 이들이 행한 폭력의 실태가 당시 너무도 심각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철거범죄 보고서, 1998년 11월>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현재 개발현장에서 나타나는 철거용역업체들은 대부분 '입산'과 '적준'의 주요 임원들이 분화하여 세운 업체들이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관련 도급 1위인 '다원E&I'는 (구)적준용역(다원건설)이고, 도급 2~3위권인 '참마루건설'은 다원에서 분화하였으며, 용산4구역에서 문제를 일으킨 '호림건설'은 '참마루'에서 분화하였다.

현재 서울지역 재개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다원', '참마루', '삼오진', '유에스(유피)', '호림', '대길공영', '비조', '태형E&C', '세경D&C', '우진미래로' 등은, 인적 뿌리부터 '입산'과 '적준'의 후예들이거나, 그들을 모델화하여 생겨난 업체들의 후예들이다.

3. 철거용역 업체, 어떻게 움직이나?

앞서 지적했듯 이들 철거용역 업체들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기본으로 하는 철거업체로, '경비업' 면허도 가지고 있거나, 별도 법인으로 '경비업'면허를 가진 업체들을 수중에 두고 있다.

이들의 물주인 오너(주로 폭력배 출신)와 CEO인 대표이사 외에 10여명 내외의 영업직원(체대, 법대출신)만을 정직원으로 두고있다. 그리고 관리처분 전후하여 현장을 어슬렁거리는 현장관리직원은 함바 등의 이권을 노린 지역 양아치들이 맡으며, 철거업체의 오너가 직접 이들의 매개체가 되어 움직인다.

이들 철거업체의 관리하에 경비업체, 석면처리업체, 지장물(상하수도,전기,가스)처리업체 등이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행정대집행 등 현장에서 퇴거의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계에서 직접 모집하는 형식을 취하나, 실제로 모인 용역들은 일선에서는 밀려난 조폭들의 후계들로, 전반적으로 철거업체의 관찰하여 선을 대어 모집한다. 집행현장에서 '시설경비'를 담당하는 배치신고된 경비용역외에, 바

로 이러한 소위 '깡패'들이 집행관이라는 '일일 공무원'의 형식으로는나 철거업무를 맞는 '철거 회사 직원'의 형태로 폭력에 가담한다. 그리고 이들의 업무는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비 업무에서 제외된다.

또한 철거업체의 수중에 있는 별도의 경비업체는 사업하나 하고 나서 해체하고, 다른 법인으로 바뀌게 된다. 철거업체에게 경비업무는, 막대한 이득을 가져오는 철거계약(2)을 따기위한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철거업체에게 경비업체는 한번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가 경비업법으로 개별 경비원이 처벌될 수는 있어도 그 경비업체나 그 뒤의 철거업체까지 처벌에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는 경비업법의 개정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참마루'의 '업무범위'에 대한 소개를 보면, 아래와 같다.

- 1.재개발사업지구내 건물의 완전철거 및 해체공사.
- 2.사업지구내 모든 거주민의 완전 이주 및 공가관리.
- 3.사업지구내 이주 및 철거공사를 위한 철거관련 실무.
- 4.이주 및 철거공사 방해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
- 5.사업지구내 상주경비
- 6.사업지구내 위험 건축시설에대한 수시점검과 사고예방 및 사후처리
- 7.공기관리를통한 범죄예방
- 8.공사에 필요한 유관기관에대한 교섭
- 9.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등에대한 조치
- 10.토지수용 및 행정대집행관련 행정업무
- 11.명도 및 명도단행가처분, 매도청구소송 및 법원 강제집행 실시 대행
- 12.철거 및 해체된 건축폐기물 일체의 처리
- 13.공사와 관련된 방음벽 가설 및 이를 위한 터파기 공사
- 14.도시가스,통신선로,상하수도,한전주등의 이설에관한 대관행정업무 대행
- 15.철거잔재 반출
16. 기타 공사와 관련된 업무 일체

2) 지상물, 석면, 지장물처리 등 철거업무와 관련하여 3개월 단기 계약으로 대지 2만평(약 1500세대)기준 5~60억 원 정도 계약함. 마진율 70%에 이룸. 이 오더를 따기위해 경호업무를 수행.

위 16가지 업무들을 크게 구분해 보면 '건물 철거와 관련된 일체'와 '거주민 이주와 관련된 일체'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철거계약을 따기위해 (총회장 경비 등)경비업무를 하는 것처럼, 철거계약을 따기위해, '이주'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개발지역에서의 주된 일상적 폭력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대규모의 용역들이 동원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큰 폭력사태로 가지만, 대부분의 철거민들이 그만한 규모의 물리력에 맞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돌의 횟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

오히려, '거주민 이주와 공가관리'라는 명목으로, 본격적인 철거가 있기 전부터 지역에 상주하는 '용역깡패'들이, 시간마다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일상적인 '폭력, 협박, 위협, 영업방해, 성희롱, 방화, 오물투척, 낙서, 통행방해. 모욕, 집단적 어슬렁거림, 시비걸기, (창)문/상하수도 파손....'등의 폭력을 행하는데, 이것이 개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심각한 용역폭력의 현실이다. 이러한 폭력은 철거예비행위의 일환으로 실상은 빠른 이주, 내쫓기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폭력이다.

3. 경찰과 용역은 한편?

이러한 계획된 폭력은 대부분 처벌된다 하더라도 (물리적 폭행의 경우) 단순폭행 혹은 (철거민들과) 쌍방폭행으로 처리된다. 오히려 철거민들의 저항이 업무방해, 주거침입이라는 죄로 즉각적으로 연결되고 더 무거운 형을 받곤 한다.3)

때문에 개발지역 철거민들은 '경찰과 용역은 한편'이라고 까지 얘기하며 불신한다. 이는 최근 sjm 노동자들에 대한 용역들의 폭력을 방관한 경찰들의 태도에서도 들어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경찰과 용역들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 * 철거현장에서 공사 시행·시공자측(건설사, 조합, 지자체등 공기관등)이 철거 반대 집회·시위 및 농성등에 참가한 철거민, 철거반대 집회·시위 및 농성 참가자 등을 고소, 고발, 신고한 경우의 건수 및 검거건수, 검거인원(기간은 2008년 1월 1일 부터2011년 8월30일까지-서울청) 【표-C】

현장명	시기	고소, 고발, 신고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검거율	적용법
흥인덕운상가	2008. 3월	2	2	33명 -구속 1/불구속 32	100	업무방해
정릉 스카이라파트	2008. 5월	1	1	3명 (불구속 3)	100	집시법
왕십리뉴타운 2구역	2008. 12월	1	1	19명(불구속 19)	100	업무방해
舊화이자 부지 공사	2010. 3월	1	1	3명 (불구속 3)	100	집시법
구로,금천 가로정비	2010. 3월	1	1	14명(불구속 14)	100	퇴거불응
광진 두산위브	2010. 4월	1	1	2명(불기소 2)	100	집시법
천왕동12번지 재개발	2010. 6월	1	1	11명(불구속 11)	100	주거침입
선유초교옆 고시텔	2010. 8-10월	1	1	6명(불구속 6)	100	업무방해
구룡마을주민	2011. 4월	1	1	16명(불구속 16)	100	특수공무집행
상도4동 재개발	2011. 5월	4	4	4명 - 불구속 1 - 불입건 3	100	업무방해
명동3구역	2011. 7월	1	0	0	수사중	업무방해
달터마을 철거	2011. 8월	1	0	0	수사중	폭력행위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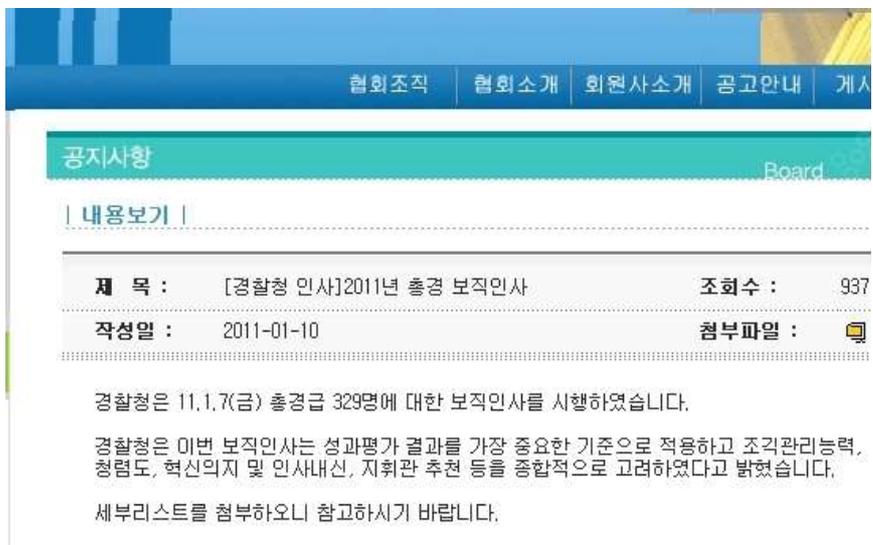
* 철거현장에서 집회·시위 및 농성 참가자가 공사시행·시공자측이 고용한자(용역, 경비 등)에 대하여 고소 고발 신고한 경우의 건수 및 검거건수, 검거인원(기간은 2008년 1월 1일 부터2011년 8월30일까지-서울청) 【표-D】

현장명	시기	고소, 고발, 신고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검거율	적용법
상도4동 재개발	2011. 4월	11	5	5명 - 불입건 5 - 미제처리 1 - 수사중 5	수사중	재물손괴
응암9구역	2009. 5월	1	1	9명 - 불구속 9	100	집회방해

* 국회 행안위 장세환 의원실(2011.10)

실제로 경비업협회등의 홈페이지에는 경찰청 인사발령 명단들이 공지사항으로 올라오며, 조회수도 높게 차지한다. 경찰청 관리관할에 있는 경비업체들이 경찰 인사발령에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도, 경비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경찰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특히 2011년 행안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퇴직 경찰 고위공직자 중 이직 후 경비업체의 고문이나 감사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많았다.⁴⁾

물론 이는 주로 앞서 언급한 경비업 면허를 가진 경비업체들의 경우이다. 개발지역의 철거업체의 경우 앞서 이야기한 조폭 출신의 오너들이 과거부터 연결되어 오던 경찰들과의 인적 고리가 깊다고 한다.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경찰청 인사] 2011년 총경 보직인사

4. 시급한 ‘경비업법 개정’ 과 반드시 재정되어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문제는 이러한 철거용역들의 폭력이 일정한 수준에서 ‘법’의 보호아래,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작년 개발지역 중 용역 폭력사태가 심했던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에서도, 폭력사태와 관련한 시행업체의 인터뷰를 보면, ‘우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데, 저

4) 시사저널 [1146호] 2011.10.05, ‘퇴직 경찰들, 왜 경비용역업체로?’ -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2006년~2011년 8월)에 따르면 퇴직 경찰관 중 상당수가 경비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 재취업했다. 행안부가 가부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 중에서 경비·용역 업체로 간 퇴직 경찰관은 13명이다. 총경급 이상은 주로 대형 경비업체의 ‘고문’이나 ‘감사’로 자리를 옮겼고, 경사·경위 등은 경비원이나 사원으로 들어갔다.”

들(세입자)이 법적인 업무를 방해한다며 억울해 한다. 이는 현행 개발사업 자체가 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법으로 착착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어도 상관없는 것이 현재의 개발사업의 절차법들이다.

현재의 한국의 개발제도 하에서는 이주와 철거가 구분되지 않는다. 강제 퇴거와 동시에 철거가 이루어지곤 한다.(물론 구청 개발담당자는 지붕이 내려앉아야 철거고 벽에 구멍을 뚫는 행위는 철거가 아니라며 발뺌한다.) 그래서 철거용역들이 퇴거를 종용하기위해 온갖 폭력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다. '시간이 돈'이기 때문이다.5)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

경비용역과 관련한 폭력을 방지하기위한 '경비업법'의 개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경비업법 개정안이 잠자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경비업법의 개정만으로는 개발지역의 폭력의 구조를 단절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우선 경비업법 자체가 시설경비, 요인경비, 호송경비, 특수경비 등을 행하는 '경비업체'의 경비업을 육성발전하기 위해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폈듯 개발지역에서는 '철거업체'가 철거업무의 일환으로 행하는 철거예비행위 및 이주업무가 '경비업'으로 구분되기 어려우며, 이러한 이주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일상적 폭력에 '경비업법 위반'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6)

무엇보다 '이주/퇴거'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폭력은, 한편으로는 '나갈 수 없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퇴거과정에서 단정한 복장에, 욕을 하지 않고, 몽둥이들 들지 않으며 정중히 법원 집행관 입회하에 퇴거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대책 없이 나갈 수 없는, 쫓겨날 수 없는 이'들은 '버틸 수밖에 없다' 그러한 '버팀'은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라는 '법 위반'이 되고, '법의 실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필요최소한의 물리력'이 사용될 것이다.

'이주'를 시키기 위해 폭력과 협박이 난무하지만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이 너무나도 부실한 상황에서, '폭력'의 근절은 '폭력행위' 자체만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5) '시간이 돈'이라는 말은, 용산참사 발생 두달만에 용산 4구역 개발이 재개되었을때, 서울시 부시장이 한 말이다. 참사해결 없는 공사재개에 범대위 대표단의 시장면담 요구하였으나, 부시장이 면담하였고, '시간이 돈'이라며 공사를 지연 할 수 없다고 하였다.

6) 작년(2011년) 경찰청(생활안전국)은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원 및 용역폭력 방지 대책"이라는 내부 검토문건에서도, "(철거업)용역 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현행 경비업법으로 모든 용역을 관리 할 수 없으므로 국토해양부 등 주무부처에서 업종별 소관법률에 따라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용역 관련 법률에 피용자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및 사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등을 신설 하여야 하고, 개별 법률의 흠결을 보완하고 용역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용역폭력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입장 보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개발사업에서의 폭력은 근절은, 거주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종류와 시행주체 및 관련적용 법률에 따라 나뉘는 현 개발법들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는 대안적인 근거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지난 용산참사 3주기, 용산참사 재발방지법으로 마련된 '강제퇴거금지법'이 18대 국회 14,545 번째 법안으로 발의된 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18대 국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강제퇴거금지법은 개발사업에서의 인권의 실현을 위해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발지역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모든 '거주민'들이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정적인 점유와 생계활동의 지속이 보장되는 '재정착'의 권리를 밝히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강제퇴거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이다.

근본적으로 폭력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주나 이주를 위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퇴거와 철거 및 철거예비행위가 '철거용역 폭력'의 시작과 끝이라는 점에서 이를 금지하고 거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제퇴거 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경비업법 개정과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으로, 개발사업에서의 폭력의 시간을 멈추게 해야한다.

경비용역 배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철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1. 근대 법치주의와 자력구제의 금지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폭행해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가? 근대 법치국가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자력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공권력에 의한 권리 실현만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적 폭력을 통한 권리실현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노동쟁의현장이나 재개발현장에서 일어나는 경비용역의 폭력 문제는 그와 같은 법치주의 근간을 이루는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규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노동쟁의 현장과 재개발 현장에서의 용역 투입의 법리적 쟁점

최근 용역투입으로 문제되고 있는 만도의 사례를 보면 2012. 7. 26. 사측과 노조는 휴가 전 마지막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7일부로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이에 사측은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직장폐쇄에 돌입하고 노조원들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용역을 투입하였다. 이 때 사측이 경비용역 배치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직장폐쇄에 따른 퇴거의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므로 사용자는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사용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2180판결).

그러나 퇴거단행을 위해 사용자가 경비용역을 투입하여 자력구제를 실시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자신의 권리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방어적 형태의 자력구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격적 형태의 자력구제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아무리 권리실현을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이를 폭력을 행사하여 실현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재개발현장의 경우도 권리실현을 위한 자력구제의 현상은 유사하다. 정비사업에서 종전 권리와 정비사업 이후의 권리관계를 정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종전 부동산의 소유자와 세입자들은 사업시행자에 대해 명도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재개발현장의 퇴거집행에서 있어서 90년대에는 주로 주거세입자들이 명도저항이 높았으나, 현재 주거세입자들에 대해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주거이전비가 보장됨으로써 주거세입자들의 저항은 상당히 완화된 실정이고, 최근에는 상가세입자들이 권리금보상 등을 주장하면서 명도저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명도를 거부하는 상가세입자들에 대해 정비사업조합은 명도판결을 확보한 이후 이를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경비용역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현행 경비업법의 해석상 경비용역업체가 퇴거집행을 실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1항은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방어적인 형태의 경비업무만 가능하고, 공격적인 형태의 물리력 행사는 애초에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경비업법 제28조 제5항), 일반 형법상 폭행죄의 처벌규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것(형법 제260조 제1항)보다 오히려 약한 수준이다.

한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주택재개발·재건축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에 대해 경비원의 배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사분규 현장에서의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규정된 것이나 오히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노동쟁의현장과 재개발현장에서의 경비구역 배치의 근거규정이 되고 있다.

즉 현행 경비업법의 해석으로는 노동현장이나 재개발현장에 경비용역을 배치하는 것 자체는 합법이나, 이 경비구역들이 퇴거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석된다. 현행 경비업법의 폭력사태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현행법보다 더욱 강력한 형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노동쟁의현장과 재개발현장에서 경비구역 배치 금지 필요성

그런데 노동쟁의현장에서 경비구역의 임무란 결국 쟁의중인 조합원을 해산하거나 공장에서 퇴거시키는 일이 될 수밖에 없고, 재개발현장의 경비구역의 임무란 결국 강제퇴거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배치된 경비구역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화된 모습이다. 여기에 경비업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경비업체들은 형사처벌을 받는 일도 꺼리지 않고 있으며, 행정상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만 바뀌 내세워 다시 영업을 하고 있어서, 사후적인 처벌이나 행정 제재의 강화만으로는 용역폭력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쟁의현장과 재개발현장에 경비구역의 투입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개정할 법규정의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7조의2(경비업자의 배치 금지) 경비업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업장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정비구역에서 직장폐쇄에 따른 퇴거집행이나 명도집행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9조의1(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제1호 내지 제6호의 2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생략)

6의2. 제7조의2 위반의 경우

제28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을 배치한 자

5. 결론

개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일은 법치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노동쟁의현장과 재개발현장에서 배치된 경비용역들은 결국 노조원을 해산하고 퇴거집행을 위한 폭력적인 자력구제를 행하고 있다. 현행 경비업법의 해석상 경비용역의 그러한 퇴거집행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사태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노동쟁의현장과 재개발현장에서의 경비용역의 배치 자체를 금하는 것만이 폭력사태의 방지를 위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미온적으로 경비업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거나, 문제가 발생한 후에 경비원 배치철회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정도만 규정해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그와 같은 야만적 폭력을 방치해야 한다는 말인가. 국회의 신속한 법개정을 촉구한다.

경비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이상팔 /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1. 경비업법 제정목적과 관련된 개념정의

-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경비업"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등이 있음(경비업법 제2조). "경비원"이라 함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됨.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함

< 표 1 > 경비업의 종류와 내용

경비업 종류	내용	업무수행자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일반 경비원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 경비원

2. 경비업체의 현황

○ 연도별 증감현황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민간경비는 1960년대 미8군부대 경비담당에서 출발하여 1976년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체제를 잡기 시작함. 이후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등의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급성장함

- 2008년 기준 3,043업체에 142,453명의 경비원이 종사할 정도로 양적성장을 하였으며, 첨단 장비 및 기술을 활용하여 질적으로도 복합적으로 성장함
- 서울, 경기 수도권의 업체수는 1,724로 법인의 56.7%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으며, 업종별 순위는 시설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호송경비 순으로 나열됨

<표 2> 민간경비업체 현황

구분	법인수	허가 업종별 현황					
		업종계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총계	3,043	3,628	2,923	51	446	146	62
서울	1,268	1,588	1,221	38	252	41	36
부산	244	280	238	2	26	9	5
대구	178	199	170	1	21	5	2
인천	116	135	109	0	15	7	4
광주	97	117	95	1	15	5	1
대전	108	119	104	0	9	5	1
울산	43	52	42	1	4	4	1
경기	456	540	432	6	62	36	4
강원	51	60	51	1	6	2	0
충북	56	68	55	0	4	9	0
충남	73	83	69	0	7	6	1
전북	64	72	62	1	5	3	1
전남	71	76	63	0	2	6	5
경북	90	94	88	0	3	2	1
경남	108	123	104	0	13	6	0
제주	20	22	20	0	2	0	0

자료 : (사) 한국경비협회(2009)

<표 3 연도별 경비업체 경비원 증감 현황>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경비업체	1,929	2,051	2,163	2,322	2,515	2,671	2,834	3,043
경비원	97,117	107,963	104,872	105,697	122,327	127,620	135,400	142,453

자료 : 경찰청(2009)

<표 4> 민간경비원 현황

구분	총계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총계	142,453	116,429	3,477	10,357	5,363	6,827
서울	41,394	31,363	1,511	6,714	1,050	756
부산	11,417	9,173	353	1,056	312	524
대구	6,108	5,111	292	395	278	32
인천	10,993	7,756	44	171	244	2,778
광주	3,134	2,487	159	117	226	145
대전	3,689	2,806	203	408	172	100
울산	3,201	2,720	46	46	88	301
경기	34,437	31,570	389	779	1,283	416
강원	3,007	2,521	105	65	187	129
충북	2,804	2,282	50	133	207	132
충남	5,056	4,519	59	51	243	184
전북	2,960	2,483	72	148	185	72
전남	2,856	2,122	18	16	206	494
경북	4,953	4,356	46	3	297	251
경남	5,373	4,641	105	165	328	134
제주	1,071	519	26	90	57	379

자료 : (사) 한국경비협회(2009)

- 경비지도사 운영현황 측면에서 살펴보면, 1997년 경비지도사 제도 시행 이후 2008년 기준으로 총 15,941명을 합격시켰으며, 이 중 13,685명에게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발급함. 이중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3,781명이 경비업체에 종사하고 있음

3. 경비업에 대한 경찰의 지도·감독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경비업법 제24조)
-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 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음(경비업법 제24조).

4. 경비원 등의 의무·벌칙 및 위반사례

1) 경비원 등의 의무

- 「경비업법」 제7조는 경비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법 제15조는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경비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 조항에서 ‘경비업무의 범위’라 함은 법 제2조제1호 각목에 규정된 경비업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법 제16조는 경비원의 복장·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부령에서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적·경봉 및 분사기 등을 근무 중에 한하여 휴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7)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장구 등)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하되, 근무중에 한하여 이를 휴대할 수 있다.

<표 5> 경비업법 관련 조문

제7조 (경비업자의 의무) ①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2 (경비원 등의 의무) ①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복장·장비 등) 경비원의 복장·장비 및 출동차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등

○ 「경비업법」에 따른 벌칙

- 법 제28조는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과, 경비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 기타

- 법에 따른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통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실을 가한 경비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법」상 폭행 또는 상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봄

8) 「경비업법」 제28조 (벌칙)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⑤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경비업법 위반 사례

- 판례는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에게 경비원의 직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바, 여기서의 처벌대상에는 경비업자 또는 피용자가 아니더라도 경비업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역시 포함된다고 보고 있음
- 또한 판례는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이 외부인의 출입을 저지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경비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경비업법 위반 관련 판례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2항이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6호는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규정의 문언 및 경비업자 또는 그 피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도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주체는 반드시 '경비업자 또는 그 피용자로서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567,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 23. 선고 2008노1835)

구경비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의 2 제2항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시설경비업무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피고인이 박□□에게 의뢰한 경비업무는 ㉠산부인과에 대한 시설경비업무이므로(박□□의 진술. 피고인은 신변경호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진술내용 및 그 경위 등에 비추면 박□□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박□□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산부인과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진■ 등의 출입을 막는 행위가 위와 같은 위험방지를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아울러 위와 같은 행위가 신변경호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 23. 선고 2008노1835)

○ 폭행죄 등 적용 사례

- 하급심 판례 중 경비용역 직원이 업무범위를 벗어나 폭행을 한 사건에 대하여 폭행 및 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례가 있음

경비원에 대한 폭행죄 적용 관련 판례

○○ 소속 경비용역직원인 임○○, 이○○, 김○○, 명○○은 2007. 1. 4. 08:30경 원고의 본사 건물 앞 노상에서 평소와 같이 대체근로를 감시하던 ○○지회 노조원들에 의하여 원고의 본사 건물 진입을 제지당하자, 김○○, 명○○은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임○○은 피고 정○○에게 “너 나랑 붙자,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팔로 피고 정○○의 목부분을 감아 비틀어 폭행하였으며, 이○○은 피고 김○○에게 달려 들어 피고 김○○이 원고의 본사 건물 정문 유리문에 머리를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중략…) 임○○, 이○○은 위 (4)항의 폭행에 대하여 2007. 8. 3. 이 법원 2007고약 14794호 약식명령에서 벌금 100만 원 및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조○○은 위의 폭행 및 손괴행위에 관하여 이 법원 2007고정2292호로 기소되어 2007. 12. 11.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4. 10. 선고 2007가합2716)

5. 경비업법 위반 관련 개선방안

1) 일반경비원의 특성화된 교육

-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경우 각 경비업무의 특성에 맞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교육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각 경비업무에 맞게 구분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양적 성장에 치우쳐 왔던 민간경비산업이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입교육문제 뿐만 아니라 경비원의 재교육 및 경비업체 종사자 전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함

- 최근 경비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도급을 받기위한 덤핑과 불법이 난무하는데, 이는 경비업자 및 임원의 자질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중 72.4%가 미취업자인 상황인 바 관련업종에서 실제 종사하고자 하는 응시자에게 합격의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경비업 관련 인·허가 및 신고업무에 관한 교육과목이 부재하여 경찰관서에 대한 업무절차 교육이 되고 있지 않으며, 경비업무 담당 경찰관에 의한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노사분규 현상에서 시설보호를 목적으로 경비원을 투입하는 경우 경비업법상의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모호하여 관련 조항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현실적으로 민간경비회사가 이러한 민원현장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음
- 경비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경비인력의 사명감이 부족하고 이직률이 높아 민간경비는 주로 전문성이 없는 단기경력자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음. 채용시 전문인력의 확보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직무교육의 실질화가 선행되어야 함
- 의뢰인과의 계약체결 전 충분한 내용(위법한 업무에 대한 거절, 이행지연, 손해배상의 무 기타)을 계약 전 의뢰인에게 설명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투입해야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고객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자금력이나 경쟁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계약을 수주하기위해 무리한 가격덤핑입찰을 하여 경비원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게 되고 저임금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큰 저해요소가 됨

2) 경찰과 민간경비업간 협력체계 보완

- 치안수요의 다양성과 전문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 양자가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사우스(South)는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보완적 관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상호 수평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공동화이론은 민간경비와 경찰이 상호 보완적이며 역할 분담적 관계로 이해하는 입장으로서, 경찰과 정부당국은 공경비가 정부의 고유한 영역이고 이를 민영화하는 것은 치안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부정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공경비도 민영화와 공유화를 통해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 합동순찰제는 우선 경찰 내에 민간경비를 담당하는 민간경비과를 설치하여 이에 대한 규율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합동 방법지문, 민간경비 서비스제도를 프로그램화하여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민간경비업계와 경찰의 상호보완적인 대표적 협의기구로, 경찰청 생활안전국에서 운영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민간경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기구로서 민간경비발전협의회를 들 수 있음. 현재로서는 이러한 민·경 협력기구가 경찰청에서만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봄

- 경찰청에서는 경비업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사회 전반의 범죄 대응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을 적극 육성·시도하고 있음
 - 「기계경비·지역경찰 협력 방법활동 강화방안」을 시행하여 연계 순찰을 실시하고 범죄예방 능력을 제고하는 등 경찰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함
 - 이에 더하여, 기계경비업체의 범죄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동경비원 근무 표준 매뉴얼」을 5,000부 제작하여 배포함
 - 경찰청에서는 민간경비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서 단위로 관내 경비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민간경비 전담부서가 없어 관리·협력체계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3) 경비업 신규 허가 및 자격기준

- 민간경비업 설립허가시, 초기에는 소양교육을 중심으로 이후에는 일반이론, 취지, 윤리, 법적 규제 등의 교육을 경찰청 소속 교육담당 실무자가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를 자격제도와 연계하여 경비원 자격증을 급수별로, 예컨대 3급 일반 경비원, 2급 관리·감독자 및 경비업체 임원, 1급 경비업체 설립자 등으로 나눈다면 설립 허가의 요건 강화의 한 방안이 될 것임

- 법인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야 함. 특히 범죄 이력의 경우 어떠한 범죄로 처벌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있어야 하고, 방화죄, 강도죄 등 경비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자는 영구히 민간경비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개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한다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현재 요건은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민간경비의 표준화 및 그에 따른 허가 기준의 강화, 정부의 감독·지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됨
- 현재 도급실적이 1년에 1건만 있어도 경비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도급건수 및 도급액에 대한 제한을 상향 조정하여 일정 수 이상의 건수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도급액 계약이 지속되도록 하여야 함

4) 민간경비업 신규허가기준 강화 및 능력평가인증제 도입

- 민간경비업의 신규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주와 임원은 소양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업체의 능력을 평가는 인증제도를 도입·반영할 수 있음
- 근래 적법한 노사문제에 경비업체가 가담하여 경비업체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부천시 순천향병원 의료사고 분쟁에서 일반경비원을 투입하여 사건을 해결하거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시설경비업무를 맡도록 하여 이들에 의한 폭력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 위주의 대책보다는 사전에 민간경비업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단

김민기 · 김 현 · 문희상 · 박남춘 · 백재현

유대운 · 이찬열 · 임수경 · 진선미(가나다순)



참여연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용역계약 피해사례 보고대회 및 경비업법 개정방안 토론회